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과제 - 충청광역경제권을 중심으로

金泰憲



연구진

연구책임 • 김태헌 / 대전발전연구원 연구위원(PH.D.)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과제

- 충청광역경제권을 중심으로 -

김 태 헌

2009.11.30

대전발전연구원

- 목 차 -

제1장 서론	5
제2장 선행연구	8
제1절 이론적 배경	8
1. 수도권규제완화	8
2. 지방의 규제개선	16
3. 기업유치활성화 및 성과	19
4. 지방기업경쟁력	23
제2절 기업유치를 위한 규제개선에 관한 선행연구	25
제3장 규제개선현황	29
제1절 규제개선의 필요성	29
제2절 대전광역시의 규제개선현황	31
1. 규제개혁 일반현황	31
2. 대덕특구개발 관련 규제개혁 현황	46
3. 산업단지 관련 규제개혁 현황	47
제4장 설문조사분석	50
제1절 분석조사 개요	50
제2절 설문결과 분석	51
제5장 요약 및 결론	53
제1절 규제개선의 문제점	53
제2절 규제개선 성공요건	54
제3절 규제개선 향후과제	56
참고문헌	63

제1장 서론

제 1 장

서 론

법적인 개념에서 볼 때, 규제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의미하며, 경제적 규제란 기업의 본원적 활동에 대한 정부 개입으로써 진입규제, 가격규제, 거래규제, 품질규제 등으로 세분화된다.

기업규제란 정부규제 중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¹⁾를 포괄적으로 의미하며, 정부는 공익을 목적으로 기업의 진입과 거래, 가격과 품질을 통제하고 환경과 안전을 위하여 다양한 공장설립 및 운영에 관한 의무조항을 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기업에 대한 규제는 경쟁 지향적인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소비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성장성을 해치지 않아야 하며, 고용의 증대 또한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한다. 즉 규제는 최소한의 질서를 유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경제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국정수단이라 할 수 있다.

세계의 각 보고서에 나타난 우리나라의 규제 수준 및 강도는 낮지 않다. 한국의 기업규제 수준은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에서 181개국 중 23위로 선진국에 비해 규제강도는 약하지 않으며, 특히 창업지표와 고용해고 여건지표 등에서 최하위권으로 강한 기업규제정도를 보였으며, 경제자유네트워크에서 발표한 경제자유지수는 2006년을 기준으로 하여 141개의 국가 중 29위를 기록하였고, 항목 중에서는 무역자유 66위, 정부규제 65위, 시장규제 65위 등으로 취약한 결과를 보였으며, 세부적으로는 노동규제가 107위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우리나라의 기업에 대한 규제가 국제적인 기준에서 볼 때 규제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규제가 복잡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한다. 따라서 국제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이러한 높은 규제수준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 기업에 대한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또한 규제에 대한 타당성을 정치적 기준이 아니라 경제적 합리성 측면에서 재평가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할

1) 보건, 안전, 환경과 같은 공공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정부가 기업의 사회활동에 개입하는 것을 의미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기업활동과 관련한 규제는 분명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있으며 정부는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비현실적이거나 모호한 규제들이 기업 경영 전반에 걸쳐 기업활동에 발목을 잡거나, 정부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의 목표를 저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조례를 통한 기업활동 규제는 해당 지자체로의 기업유치 실패 및 타 지역으로의 이전으로 그 결과가 나타나며, 그 결과 해당 지자체의 경제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기업유치활동과 관련한 생태환경과 관련된 인프라 측면의 연구는 많으나, 법제도적 측면에서 규제완화 및 개선과제 발굴은 저조한 상황이다. 따라서 지역경제발전과 연계하여 우리 지역의 대덕특구 등 기업에 대한 경쟁력 저해과제를 중점적으로 발굴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학문적 접근을 통한 연구방법보다는 기업활동 및 기업유치에 저해가 되는 규제의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침체된 대덕특구 등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과제를 발굴함에 있어 경제자유구역, 특별자치도 등 유사사례와 비교하여 중앙부처 설득 및 법개정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기업규제 개선과 관련한 선진국 우수사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규제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건의 및 관철과 기업규제완화를 위한 시정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제 2 장

선행연구 및 이론적 고찰

제1절 이론적 배경

제2절 기업유치를 위한 규제개선에 관한 선행연구

제2장 선행연구 및 이론적 고찰

제 1 절 이론적 배경

1. 수도권규제완화

1) 공장입지규제개선

공장입지규제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대표적인 규제는 공장건축총량제도로 수도권 인구집중과 지역균형발전을 정책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공장총량제도에 대한 평가는 수도권의 인구 억제나 지역균형발전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주장과, 시장실패를 보완하여 수도권으로의 과도한 산업집중을 억제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상반되고 있다.

안혁근(2006)은 수도권 공장총량 규제의 정책적 효과를 이론적 검토 및 정량적 분석, 23개의 제조업의 업체수와 종사자수의 추이를 통해 실질적 효과를 미시적으로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공장부지의 면적의 추이와 지역별 총생산액의 감소는 공장총량규제의 1차적인 효과를 달성하였음을 확인하였으나, 인구집중을 억제하는 효과와 산업의 지방분산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도권 공장총량제도에 대한 반드시 필요하며, 수도권 비수도권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역별, 입지유형별 특징을 고려한 규제, 기업의 규모에 따른 규제, 기업의 특징을 고려한 규제, 제조업종별 특징을 고려한 규제, 개별입지 규제강화와 계획입지 유도규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류종환·김진기(2006)는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완화는 수도권의 재 집중을 초래하고 지방을 희생시키며, 이는 지역간 정치적 갈등뿐만 아니라 규모의 비경제를 초래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데에도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국가균형발전(선 지방 육성)과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SOC투자를 확대해 지방이 공정경쟁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수도권과 상호 배타적, 경쟁적 관계보다는 상생 또

는 공생할 수 있도록 보완적 관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현행 공장입지에 대한 기본 원칙을 공장 건축 총량제의 강화, 성장관리권역 대기업 첨단업종의 신·증설 및 건축면적 증설 축소, 수도권 성장관리권역내 국내 대기업 신·증설 허용 8개 업종(2006년말 까지 한시적 허용)에서 25개 첨단업종 확대와 영구적 허용을 저지하는 내용의 규제강화 방향으로의 전환을 주장했다.

(1) 수도권내 공장의 신·증설, 이전규제 폐지/완화

수도권내 공장의 신·증설, 이전 규제 폐지 및 완화는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에 해당하는 과제로, 산단(과밀/성장)내 공장 신·증설·이전규제 완화와 과밀·성장권역(산단 외) 공장 증설·이전규제 완화 등을 세부과제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지식경제부에서 주관하고 있다.

산업단지내 공장규제는 과밀억제 권역의 경우 신설은 업종별 1천~1만㎡, 증설은 기존공장 및 3천㎡ 이내, 이전은 동일산단 내에서만 가능했으며, 성장관리권역에서는 신설은 업종별 5천~1만㎡, 증설은 업종별 3천~1만㎡이며 14개 첨단업종의 경우엔 100%까지 가능했고, 이전의 경우 동일산단내 및 공공사업으로 인한 철거시 타산단으로의 이전을 허용했다.

그러나 이번 수도권 규제 합리화 개선으로 산업단지 내(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에서는 규모·업종 제한없이 공장의 신·증설 및 이전이 허용되었다. 성장관리권역 중 산업단지 외 지역내 공장 증설·이전 규제 또한 모든 첨단업종(96개 업종)의 기존공장의 증설범위가 확대되었다. 공업지역 내 3천㎡ 이내(14개 업종은 100% 이내)로 제한되었던 규모제한은 폐지, 공업지역 외 14개 업종만 100% 이내로 제한되었던 증설은 모든 첨단업종에 대해 200% 이내로 증설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된다. 첨단업종 외의 공장은 기존부지 내에서 증설을 허용하며, 과밀억제권역·자연보전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내 공업지역으로 이전 가능한 업종은 8개 업종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또 과밀억제권역 중 산업단지 외 지역내 공장 증설 범위는 공업지역 내 첨단업종 1천㎡에서 200% 이내로, 기존 부지내 증설은 10개 업종에서 전체 업종으로, 공업지역 외는 첨단업종 1천㎡에서 100% 이내로 확대된다.

(2) 공장·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

공장·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은 국토부에서 산업단지 공급물량 신축조정과 서울내 도시첨단산업단지 허용(법개정)을 주관하고 있으며, 공장규제 대상 축소는 국토부와 지경부에서 주관한다.

공장·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에 관한 내용은 일단 경제자유구역,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 지원도시사업구역 등 국가 정책적으로 개발하도록 확정된 지구내 산업단지는 총량규제에서 배제되며, '09년부터는 산업단지 공급물량을 지자체 수요를 감안하여 신축적으로 공급한다. 서울은 도시형 첨단산업 기능 위주로 재편하기 위해 지식·문화·IT산업이 입주하는 소규모(1만㎡ 이상)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을 허용한다. 또 「수정법」의 「공장총량제」 적용대상(연면적 200㎡ 이상)을 「산집법」에 의한 500㎡ 이상 공장으로 상향조정하되, 「산집법」에 의해 자연보전권역내의 공장 건축면적 산정시 오염배출시설이 아닌 창고·사무실 제외되며, 제조시설 확대효과 약 10만㎡ 정도이다.

2) 산업현장권역규제

(1) 자연보전권역 규제개선 및 오염총량제(임의제)

환경보전을 전제로 한 자연보전권역 규제개선 및 오염총량제 실시와 관련한 규제 완화 역시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07.12를 기준으로 한 자연보전권역은 한강수계 보호 및 녹지 보전을 취지로 하고 있으며, 인천지 등 5개시와 3개 군의 3,838km²으로 수도권의 32.7%에 해당되며 인구는 982천명으로 4.0%에 해당된다. 이러한 수도권 규제는 외투기업으로 하여금 기존공장 증설규제(자연보전권역내 1천㎡) 등으로 첨단 생산설비 투자를 위한 공장 증설(160억원)이 곤란하여 중국내 투자를 하는 등 외투기업 뿐만 아니라 국내기업의 해외이전 요인으로 크게 작용하였다.

우선 환경규제방식을 입지규제중심에서 총량제·배출규제중심으로 전환하였으며, 오염총량제 의무시행방안 확정('08.11) 및 관련 입법을 추진('09.4)하였다. 수질오염

총량관리 실시 지역의 경우에는 입지규제 완화의 경우 오염총량제 실시 지자체에 대해 개발사업 허용범위를 확대('09.3)하였다.

< 표 1 > 오염총량제 허용범위 확대

허용대상	현재	2009.3월
◦ 도시/지역개발사업	6만㎡ 이내	도시지역 : 10만㎡ 이상, 비도시지역 : 10만 ~ 50만㎡
◦ 관광지조성사업	6만㎡ 이내	상한 폐지
◦ 대형건축물 : 판매용 15천㎡ 이상, 업무용 등 25천㎡ 이상	금지	입지 허용
◦ 폐수비발생 공장 신증설	금지	입지 허용

* 공업용지조성사업(6만㎡ 이내), 첨단공장 신·증설(1천㎡ 이내)은 2010년까지 국내외 전문가의 연구검토를 거쳐 확대

자료: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2008.10.30

환경보전을 전제로 한 자연보전권역 규제개선의 세부과제로는 환경부의 오염총량제 의무화시행방안 확정, 오염총량제 관련법안 입법추진(법개정), 국토부(환경부)의 오염총량제(임의제) 실시관련 규제완화 등이 있다.

(2) 인천경제자유구역 권역조정

인천경제자유구역 권역조정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관한 내용으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한 국내 앵커기업 유치가 가능하도록 인천경제자유구역²⁾내 과밀억제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3) 서울내 도시첨단산업단지 허용(법개정)

서울내 도시첨단산업단지 허용에 관한 내용은 기본적으로는 공장·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에 해당하는 과제이며, 더불어 첨단산업의 경우에도 수도권 입지를 과도하게 제약하여 연구개발 인력 등 기업활동에 애로를 가지고 있어 연관성이 있다.

2) 인천 경제자유구역(2009.3km²): 성장관리권역(km²), 과밀억제권역(53.3km²)

공장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 부분에서 서울은 도시형 첨단산업 기능 위주로 재편하기 위해 지식문화·IT산업이 입주하는 소규모(1만㎡)이상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을 허용하였다.

3) 수도권특별규제

군사시설보호구역 대폭완화와 공공법인 사무소 신·증축 허용 및 금융사무소 등 과밀부담금 면제는 2008년 10월 30일에 개최된 제8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확정·발표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은 국내 경기 하강 극복을 위해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규제개혁의 요구와 더불어 경제활동의 기초요소인 국토분야에서도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기업의 투자 촉진 등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할 필요에 의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도시산업용 토지를 충분히 공급하여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이용체계의 효율화 및 토지공급 능력을 확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책이다.

(1) 군사시설보호구역 대폭완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에서는 현행 국토이용체계를 개괄적으로 국토이용계획체계, 용도지역제도, 국토개발체계 및 수도권규제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있다. 군사시설보호법의 경우 「국토계획법」 이외로 개별법에서 별도의 목적으로 지역·지구를 지정·운용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규제는 경직적이며, 과도한 규제·중복 절차 등이 문제시 되어 왔다. 또 복잡한 각종 토지이용규제는 토지의 규모 있는 계획적 개발을 저해하고, 난개발 및 계획과 괴리된 토지이용의 실상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게 되었다. 특히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 작전환경 변화와 무관하게 획일적인 구역설정 및 규제적용에 따른 지역발전 및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되고 있다. 따라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중 작전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지역발전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전체 58개 지역 454km²을 해제 및 완화하도록

하였으며 이 면적은 여의도(윤중제 내부시가지 2.95km² 기준)의 153배 수준이다. 또 군사분계선 인접 지역의 민간인통제선 5km를 북상 조정하고, 군사분계선이남 25km 초과지역 군사시설의 보호거리 축소하는 등의 규제 개선토록 하였다. 또 국토종합계획상 향후 12년간 토지개발 소요량은 3,000km²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영봉(2006)은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군사시설이 입지한 일정한 지역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설치한 관련 지역이 경제활동에 있어 많은 제약을 받아왔으며, 또한 중요 훈련 등으로 인해 경제활동 지장과 각종 피해 발생이 지역발전에도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국토의 균형발전과 이용의 극대화 차원에서 군사시설의 입지 및 보호구역에 대한 장기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이용 구조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도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과 규제의 완화가 군사작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차원에서 과감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고, 규제완화 방안 중 파급효과가 가장 큰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범위 조정을 군사작전과 군사시설보호에 최대한 역점을 두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정주환경의 개선과 토지이용의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어 국토이용의 합리적이란 명제를 토대로 해당지역주민, 지방정부 및 중앙부처, 관련 군부대간의 활발한 대화와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원우(2002)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문제점으로 과다지정, 지역편중현상, 지나치게 과도한 기본권 제한 등을 지적하며, 이러한 재산권제한은 개개 국민의 기본권제한이라는 문제를 넘어서 일정한 지역 전체의 개발과 투자를 제약하여 결국에는 지역 전체의 경제·사회·문화적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보호구역의 설정으로 인해 재산권에 제한을 받고 있는 국민을 보호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을 요청하였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보호구역의 해제와 전면적인 검토를 통한 불필요하게 설정된 보호구역의 해제 또는 통제보호구역의 제한보호구역으로의 등급조정과, 보호구역내의 각종 금지 및 제한 사항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는 예외의 적용범위를 확대 규정하여 재산권행사의 제한을 최소화할 시킬 것과 또 보호구역의 설정 자체는 합헌적이고 법률상 적법하게 집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예외적인 경우 보상 없이 이러한 제한을 가하는 것에 대하여 보상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소성규(2008)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분계선에 인접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

원도에 93% 이상 집중되어 있어 타지역 대비 상대적인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하므로 국가안보의 존속과 경제적 과실은 해당 지역에 배당되어야 하고, 국가발전 가속화와 안보기반 강화의 거시적 차원에서 인식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안보세의 도입과 통일에 대비한 군용지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를 주문했다.

(2) 공공법인 사무소 신증축 허용 및 금융사무소 등 과밀부담금 면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의 합리적 개선을 들 수 있는데, 수도권 과밀억제 효과에 비해 기업활동 및 주민생활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를 시급히 정비하고, 규제개편에 따라 발생하는 편익을 수도권과 지방이 균형있게 나눴으로써 조화로운 국토발전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그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혁신도시 등 지방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공공기관의 경우, 수도권 심의를 거쳐 공공법인의 사무소 신증축 허용³⁾한다는 규제 개선 내용과 서울시내 대형 건축물에 부과하는 과밀부담금을 금융중심지 내 금융업소와 산업단지 내 R&D시설에 대해 면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 지방의 규제개선

1) 지역개발투자여건

(1) 건축 및 건설 규제완화

김성일(2005)은 건설산업의 업역규제 및 발주계약규제의 완화 및 개혁은 정부규제를 통해 형성된 기업조직의 구성원리와 생산체계를 시장의 수요와 시장의 판단에 맡김으로써 건설산업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건설산업의 규제 중 해결이 부진한 업역⁴⁾ 및 발주계약 규제에 초점을 두고 규제의 실태 및 문

3) 규제 개선 이전에는 수도권내 공공법인 사무소의 신축이 불가하였으며, 증축의 경우에는 과밀억제권역 17개만 허용되었다.

4) 건설관련업역이란 업무영역을 뜻하며,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나뉜다. 일반건설업이란 공사 전

제점을 통하여 규제개혁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으며, 발주계약 규제의 완화를 범규에 의한 명령지시적 획일적 규제보다는 시장유인적 규제와 발주자의 자율성과 선택의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접근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발주계약분야에 있어서 입찰행동에서 나타나는 담합 등 불공정 경쟁과 하도급계약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 발주자의 재량 확대에 따른 재량남용에 대한 통제방식은 규제를 강화하거나 규제완화로 인한 효과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간접규제방식의 제도설계를 요구하였다. 더불어 업역 및 발주계약규제의 개편은 규제개혁이 추구하는 목표를 명확히 하고 업역간, 정부부처간의 조직이해관계를 넘어서는 대응적 차원의 규제 개선을 주장하였다.

(2) 금융 관련 규제 완화

최근 금융규제 완화에 관한 내용들은 금융 산업을 성장산업으로 육성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에 일조를 할 수는 있겠으나, 금융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과도하고 불필요한 준비 없는 조급한 금융규제 완화는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할 필요성이 있다.

이석호(2008)는 방카슈랑스가 큰 폭의 신장세에도 불구하고, 보험판매인원 제한 및 보험사 판매비중 제한 등의 판매규제가 여전히, 금융서비스 개선 및 금융소비자 편익 증진 등 본래의 기대효과가 퇴색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였다. 특히 보험 판매인원 2인 제한 규제, 보험사 판매비중 제한 규제는 국제적 정합성 및 규제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이미 개선을 권고한 바를 예로 들어 소비자편익을 제한하고,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국제적 정합성 및 규제의 형평성에도 위배되므로 철폐되거나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윤석(2008)은 서브프라임 사태를 계기로 주요국의 금융당국들이 현재 금융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함께 제2의 서브프라임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규제 개편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금융규제 개편논의의 핵심은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위기상황에 효과적인 감독체계로의 재편, 금융회사들의 리스크관리 시스템

체에 대한 것을 발주자로부터 직접 수수하는 업역으로 도급받은 공사를 직접 또는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어서 공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전문건설업이란 각 공경별 전문공사를 발주자 또는 일반 건설로부터 하수급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업역을 말한다.

의 정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이러한 금융규제 개편논의는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금융혁신과 시장변화에 맞추어 금융규제가 변모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를 계기로 금융규제를 재점검 하는 기회를 가지고 선진화된 감독시스템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하며, 대내적으로는 주요 금융감독기관 사이의 협의체널을 보다 실질적이고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대외적으로는 주요 감독기구들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았다.

비슷한 맥락으로 리장영(2008) 역시 미국발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드러난 규제공백과 감독소홀 등 규제·감독상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개선함으로써 향후 위기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우선적으로 새로운 증권화 추세에 대응하여 관련된 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건전성 감독과 은행의 자본건전성에 관한 감독기준의 조속한 보완 및 시행, 신용평가회사의 투명성에 대한 감독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은행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되 유동성이 극히 떨어지는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시가평가 회계제도(Mark-to-Market)”의 일률적 적용에 한계가 있으므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하며, 감독당국은 미시건전성 감독이 아닌 거시건전성 감독기법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2009년 1월 금융위원회는 130건의 '09년도 금융규제개혁과제를 확정하여 규제개혁보고회에 보고하였다. 금융위원회는 '08년에 추진한 규제개혁 기초를 바탕으로 하여 2009년에는 경제위기 극복, 서민부담 경감, 중소기업 지원확대, 일자리 창출 등 4개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하고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이며, 규제개혁의 성과가 조기에 시현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이행률 60% 수준을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09년의 금융규제 개혁의 기본 방향은 금융규제개혁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과 서민부담 경감, 중소기업 지원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규제의 양적 감소뿐만 아니라, 파급효과가 큰 핵심규제 개선 등 질적수준의 향상에 중점을 두었다. **新산업·新시장** 창출이 가능하도록 기능별 규율체계 개편 등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금융위기를 계기로 투자자 보호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는 한편,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제도약을 위한 과제도 착실히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개선과제 내용으로는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서민지원의 확대, 기능별 규율체계로의 전환 준비, **新산업·新시장** 창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진입 관련 인허가 요건 완화 및 절차 개선, 다양하고 새로운 영업모델 창출을 위한

제도개선, 소규모 금융회사의 부담 완화 및 경쟁력 제고, 금융소비자의 편의제고, 금융위기를 계기로, 취약한 투자자보호규제 및 금융회사 리스크관리체계를 합리화 등이다. 더불어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및 금융이용자의 관점에서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 기업경영여건

(1) 노동 관련 규제 개선

김재원(2007)은 노동정책은 노사간 자율적 교섭을 중시하고 기업하기 좋은 여건 마련에 비중을 두어야만 고용창출과 고성능기업의 탄생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노사문제 개선방향에 대해서 명확한 쟁의행위의 방식과 한계, 경직적인 산별노조로 인한 기업경쟁력의 약화, 노조전임자 급여의 노조부담, 단체교섭대상의 명확화와 유효기간의 연장, 공공부문노사관계의 안정화 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상생의 노사관계를 위한 법·제도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노사관계 법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세계혜택과 근로감독의 면제 혜택 부여, 기업에 합리적인 인적자원관리 시스템 구축 및 갈등에 대비한 상시적 지원체계 마련할 것과 국제화 시대의 노사관계 지원을 위한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현지 노사관계·인적자원관리지원방안의 강구, 국내 진출 외국 기업에 대한 노사관계 및 인적자원관리전담기구의 구성 등의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3. 기업유치활성화 및 성과

1) 기업유치 활성화: 기업유치 전략

(1) 산업단지 정비

박영철(2009)는 국가산업단지의 국민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지식기반경제 시대의 도래에 따른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된다고 보았다. 국가산업단지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신규 국가산업단지의 개발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한 국가 산업단지의 부가가치 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경쟁력 제고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며, 영세화되어가고 있는 기존 국가산업단지의 관리 및 신규 국가산업단지의 개발에 있어 중소기업의 입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정책과 지식기반산업의 입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국가산업단지의 역할을 강조했다. 국가산업단지 정책의 개선방향을 국가산업단지 제도의 존치와 합리적 운영, 국가산업단지 기능과 역할의 재정립, 소규모 및 임대형 및 맞춤형 국가산업단지의 공급, 외국인 투자기업의 효과적 유치에 위한 국가산업단지의 개발, 환경중심적인 국가산업단지 개발 및 관리, 기존 국가산업단지 구조재편의 실효적 추진, 국가산업입지 개발의 지원확대 등으로 제시하였다.

반영운(2009)은 장기적으로 계획입지를 지향하되 기존 개별입지 집적지의 기반시설 정비를 지원함으로써 산업집적지의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일정 수준 이상의 산업집적지로서 장기적 성장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지역으로 시행되고 있는 준산업단지 제도가 조성 기준만이 마련되어 있을 뿐, 올바른 방향으로 조성되고 그로 인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전략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였다. 준산업단지가 지속가능한 발전 즉, 생태적 부양능력 제고,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 사회적 형평성 확보, 순환사회 시스템 구축 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구지정단계의 전략으로 준산업단지 지정 가능지역의 조사·분석, 생태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거버넌스를 통한 준산업단지 조성을 제시하였으며, 지정가능지역의 특성에 맞는 혁신클러스터 혹은 생태산업단지 개발 도입을 주장하였다.

(2) 인허가 등 행정절차 간소화

김인중(2008)은 산업단지가 지역경제와 국가경제를 견인하는 기반으로서 경제성장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공급자 중심의 경직적인 산업단지 개발로 점차 다양해지는 산업용지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의 원인을 산업단지 지정·개발절차의 복잡·다기화에 기인한 것으로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한 입지공간의 적기 공급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산업단지가 21세기 국가와 지역경제 성장의 거점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급시스템에

서 탈피하여 산업단지 개발절차를 간소화하고, 과도한 입지비용을 경감하여 수요에 대응한 적기 공급체계를 마련해야 함을 강조했다. 현행 실시계획 승인계획까지 행정절차를 이행에만 3년 이상이 소요되는 산업단지 조성기간의 획기적인 단축을 위해서는 인·허가 의제처리의 확대로 부처간 협의절차 간소화, 각종 영향평가의 개선(간소화)과 문화재 조사관련 규제완화, 토지의 보상절차 개선과 농지 및 산지의 전용구제 완화, 농지·산지의 해제 및 전용 완화 등 산업단지 조성절차 간소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3) 인센티브제도 및 기타 물류 및 인프라 구축

장홍훈·이종규(2006)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을 거점으로 아시아와 세계를 상대로 하는 투자유치 전략으로 많은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것이나, 양질의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차별화된 운영전략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마케팅 믹스⁵⁾와 관련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차별화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를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국비지원의 미흡으로 인한 개발재원 계획의 불확실성과 경제자유구역별 중복되는 투자유치산업, 비효율적인 투자인센티브와 차별적인 투자 인센티브, PM의 전문성 부족 및 비체계적인 홍보활동과 광양만권 주변 지자체의 갈등 및 노무환경 불만족, 운영주체의 불명확 및 업무중복으로 인한 일관성 결여와 불완전한 운영주체로 인한 독립성 결여를 투자유치 부진으로 지적하였다. 이에 주변 특성과 연계된 클러스터의 구축, 탄력적인 인센티브와 맞춤형 인센티브 및 현물·현금 보조금 제도 비중 확대, 전문능력 및 외국어능력을 겸비한 인력양성과 수요자 위주의 환경 조성,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의 독립화 및 전문화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5) 투자유치 마케팅 믹스는 각 표적시장에 맞는 투자프로젝트 개발(product), 개발된 제품홍포(promotion), 입지보조금, 조세감면 등의 프로젝트 비용할인(price), 프로젝트가 유통되는 시장의 활성화(place) 등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투자유치 마케팅 제품활동(product)은 부동산 및 M&A 대상기업의 발굴, 공공프로젝트개발 등 투자대상물의 개발활동에 해당되고, 투자유치 마케팅 가격활동(price)은 조세감면, 총 투자액에 대한 보조금 지급,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지급 등 직·간접적인 재정보조 활동으로 투자프로젝트에 영향을 주는 활동이다(장홍훈·이종규, 2006).

2) 기업유치 성과

윤영미(2006)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온 해외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증대는 지역의 해외 경쟁력 강화 및 투자유치의 성과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며, 경기도의 해외투자 유치 사례는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리더십 창출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주력해온 대표적 성과로 보았다. 경기도의 대규모 해외첨단투자 유치 성과는 행정절차 단축과 동시행정, 기업도로 만들기 등의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 사업’, 투자환경 담당 설치를 통한 투자 외국 기업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 서비스 및 서비스의 관리, 경기도 지역 환경에 맞는 효율적인 성장거점 배치와 집중투자의 전개, 그리고 첨단 신기술 기업 유치를 통한 고도 산업기술 기반 구축과 국제 경쟁력 강화 등을 그 성공의 배경으로 보았다. 경기도의 투자유치 성공 사례로는 파주 LG.Philips LCD공장, 스미토모 화학 포승공장, 미국 텔파이사 연구소, 지멘스 메디칼사 R&D센터, 3M 투자유치 및 공장착중, Merck사(독일, TFT-LCD 액정제조), WTA사(미국, 헬기부품·완제품 생산), HOYA사(일본, LCD 포토마스크) 등이 있다.

권오혁·이성균(2009)은 웨일스 지역이 경제개발을 실질적으로 추진해 온 핵심 주체로서 기업 유치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지역경제발전정책의 성공사례로 평가되고 있는 웨일스개발청의 기업 유치를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분석하고, 그 성과를 산업입지론적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웨일스개발청의 성공에는 기업유치를 위해 그간 제공해 온 각종 인센티브들이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였으며, 특히 기업들의 초기투자비용을 감소시키는 데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과 웨일스 주정부와 웨일스개발청은 산업입지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는 점이 큰 시사점을 남겨주고 있다. 그러나 웨일스에서 기업유치 과정은 지역적 산업전문화 전략이 간과됨으로 인해 지역적인 산업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

4. 지방기업경쟁력

1) 행정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양현봉(2006)은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기업활동조사보고서(Doing Business in 2006)’의 창업하기 좋은 나라 순위에서 한국이 155개 국가 중 97위를 기록한 것으로써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창업여건이 양호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주요 선진국(미국, 캐나다, 일본)의 법인(주식회사) 설립 절차를 비교·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비교·분석한 결과 한국의 법인설립 절차는 16단계이며, 미국과 캐나다의 5단계에 비해 매우 복잡하여 법인설립 비용 또한 두 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이 한국의 법인설립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이유는 등기제도에서 기인하며, 특히 법인설립에 따른 내부절차보다는 외부절차와 관련된 형식적인 측면⁶⁾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법인설립을 용이하도록 하는 회사의 조직구조 및 회사상호 선택 등에도 규제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경제활력의 회복과 고용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회사 설립에 따른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는 정관 및 의사록의 공증 의무 폐지, 주금납입보관증명서의 잔고증명서로의 대체, 법인 등기 시 채권 구입 면제, 상업등기소로의 법인설립 절차의 일원화, 유사상호 규제 폐지, 등기 관련 서류의 표준화, LLC(합동회사) 및 LLP(유한책임조합)제도의 도입 등 개선대책을 제안하였다.

2) 기업의 진출입(창업) 용이성

양현봉(2005)는 한국의 창업기업의 법인설립에 따른 구비서류 문제뿐만 아니라 법인설립 과정에서의 비용과다 등이 개선되어야 하며, 특히 상법상의 최저자본금제도가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한 채 법인설립과 관련한 구비서류 과다 및 비용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자기자본금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창업기업은 9.8%에 불과하고 사체를 일시에 차입하여 주금납입에 활용한 후 은행에 예치한 별단예금을 바로 인출하여 상환하는 등의 위장 주금납입이 일반화 되어 있으며, 주금납입을 위해 사체를 빌리는 경우 법인설립 등기에 소요되

6) 주금납입(은행 및 금융기관), 정관과 의사록의 공증(공증인사무소), 등록세 납부(사·군·구), 채권매입(금융기관), 법인설립신고(세무서) 등

는 2~3일의 기간 동안 차입금의 0.5% 이상을 금융비용으로 지불하는 등 상법 제 438조에서 규정하는 회사의 자본금 감소절차를 이행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다. 성장잠재력 저하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기업활동 규제완화 및 창업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에 역동성을 불어넣는 역할이 필요하며, 창업촉진을 위해서는 법인설립과 관련한 최저자본금제도의 폐지, 법인설립서류의 표준화 및 수요자 지향적 절차대행, 공증서류 간소화 및 공증기관의 다양화, 법인설립 등기 신청에 따른 채권 구입 면제, 법인등록세 고지서 발급 및 창업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민원편의성 제고, 법인설립신고·사업자등록기간 단축 및 서류의 간소화, 창업법인기업 증자에 따른 비용 절감 등의 개선방안 추진을 주장하였다.

3) 노동시장의 유연성 등 노동시장 개선

김정태(2005)는 한국의 노동시장의 제도와 관행의 경직성이 고용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비판 아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발전적인 재정비가 필요한 시기이며, 한국의 노동시장환경을 살펴볼 때 이러한 점이 극명히 드러난다고 보았다.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확대되고 있고, 이러한 기업규모간 양극화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대기업의 높은 임금인상에 기인하므로 대기업근로자들의 임금인상의 자제로의 적극적인 동참을 통해 신규고용 창출 협조를 주문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에 대해서는 고용의 안정성 개념은 개별기업 차원이 아닌 노동시장 전체로 안정적인 고용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근로자들은 평생직업을 통한 자아실현을 위해 평생고용능력을 확보하고, 기업은 근로자의 직업능력향상을 위한 투자, 그리고 전체 노동시장 내에서의 이동속도와 실업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전직 지원제도 등과 같은 사회안전망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노동시장 제도개선에 관해서는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를 개혁함으로써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하나 중복규제와 기업들이 규제완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현실과 저조한 노동관련 규제의 개선을 지적하였다.

제2절 기업유치를 위한 규제개선에 관한 선행연구

김진국(2001)은 규제개혁에 있어 경쟁정책이 어떠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고, 경쟁정책을 논리적 바탕으로 한 규제개혁 실시의 미흡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주요국의 예를 들어 한국의 규제개혁에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았다. 특히 일본의 경우 상당부분 규제개혁을 진행하고 외국인 직접투자 촉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부분에 걸쳐 복잡한 구조의 규제, 규제의 투명성결여, 복잡한 유통제도, 배타적인 기업관행 등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보았다.

한영환·이성로(2003)는 일반 기업과 국민이 보는 규제개혁의 체감도가 낮은 불일치 현상이 나타나고, 전면적이고 보다 만족할 만한 규제완화를 향한 개혁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어렵다는 점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규제개혁은 본질적으로 핵심적 정치문제이며, 규제개혁은 정책 환경상의 다양한 요인과 그 요인간의 정치적 역동성과 제약요인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이 기업과 국민의 피부에 와 닿지 못하는 것은 정책이 형성·집행되는 과정에서 작용하는 여러 가지 구조적 행태적 변인사이의 역동적 교호관계 속에서 중대한 제약을 받기 때문이며, 한국사회가 선진화를 향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관료주도의 정치행정문화나 국가개입주의의 필요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하였다⁷⁾. 규제개혁을 추진하되 우리 정치·경제 사회체질에 알맞도록 개혁요소들을 전략적으로 재구성해야 하며, 선진국 모형을 따라 추진하는 정부규제개혁정책이 아니라 창의적인 접근을 통해 자기 체제의 정치문화, 과제구조 및 정책 대상집단의 특성 등을 고려한 규제정책의 범위, 대상, 강도, 수단 및 순서의 배합에 있어 보다 창의적 선택을 통해서 높은 효율성을 갖춘 국정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양금승(2008)은 선진국들은 자국기업의 국가 경쟁력 제고와 외자 유치를 위해 규제 개혁을 국정 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규제의 최소화 경쟁(Race-to-the bottom)’이 세계적인 추세로, 한국은 교역규모가 세계 10위권임에도 불구하고 규제 환경은 경쟁국에 비해 열악하며 낙후된 규제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경제

7) 또한 국민의 정부(김대중정부)의 정치철학이나 일반시민의 정서, 그리고 기업의 행태를 고려할 때 서구로부터 도입된 신자유주의적 규제개혁 정책에 따른 기업규제완화는 사실 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무엇보다도 기업 투자가 촉진될 수 있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보았다. 규제 개혁 추진 성과에 대한 기업들의 체감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며, 이러한 결과는 기존 핵심 규제의 개혁은 부진했던 반면 규제 강도가 큰 신설·강화 규제의 증가, 규제 개혁 추진체계 미흡 등에서 비롯되었음을 역설하고, 대기업 관련 규제 폐지, 수도권 규제의 전면 재검토, 토지 이용 규제 및 공장 설립 절차 개선, 현행 금산 분리 관련규제 폐지 또는 완화, 공정한 경영권 경쟁 환경을 위한 경영권 방어 수단, 주요 선진국 사례의 노동시장 규제 개혁의 추진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어긋나는 핵심규제를 개혁해야 함을 주장했다. 더불어 선진국형 규제 수준을 갖추기 위해서는 규제방식의 전환, 규제 개혁 추진 주체의 위상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김영학(2002)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생산·고용·수출 등 우리 경제 발전의 중심축으로 성장하였고, 가속화되고 있는 국제 분업체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경제를 글로벌 네트워크에 연결하고 대외협력을 증진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외국인직접투자는 산업체질 개선과 구조조정 촉진 수단으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고 보았다. 정부 또한 외국인직접투자유치를 위해 외국인투자를 전면자유화하고, 인센티브제도를 마련하였으며, 외국인 기업 전용단지 확대 등 입지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수요자 중심의 외국기업의 경영·생활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기업들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경영실태 조사를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기존의 지원제도와 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함을 지적하였다. 외국의 경우에도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경쟁국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환경이 조성될 때 외국기업은 물론 토종기업을 포함한 국내 전체 기업이 모두 많은 이익을 올리게 될 것이며, 정부에서는 기업 경영활동 관련 각종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및 철폐하여 기업의 진입부터 퇴출까지의 전과정에 걸쳐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힘을 쓸 것을 주장했다.

서명관(2007)은 경제자유구역의 추진은 주요 경제발전 전략 중의 하나로 동북아 경제중심지의 실현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며, 특히 대내외적으로 잠복해 있는 경제의 불안요인들을 극복하고,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통해 지식기반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며, 동북아의 물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중장기적으

로 보다 안정적인 경제성장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략이라 보았다. 경제자유구역은 개방 및 산업구조 고도화의 주도지역으로 파급효과 확산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게 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적 과제이며, 경제자유구역법의 개정을 위한 추가사항으로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폐지,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범위 및 정부지원 확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및 세제혜택, 외국인 학교 설립 기준 완화, 외국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한 관련법 개정, 물류관련규제 개선을 통한 물류기업 유치 등 관련법 및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제3장 규제개선현황

제 3 장

규제개선현황

제1절 규제개선의 필요성

제2절 대전광역시의 규제개선현황

제1절 규제개선의 필요성

규제 개혁은 기업의 원활한 진입과 퇴출을 도와 경제의 활력을 제고시킨다. World bank(2004)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창업규제가 심한 국가일수록 노동생산성은 떨어지고 있으며, 계약의 이행이 복잡할수록 실업률이 상승하고 있다. 즉 창업규제를 완화시키면 노동생산성은 상승할 것이며, 계약의 이행이 단순화된다면 실업률이 하락함을 의미하며, 이는 경제에 활력을 제고시키는 데 규제 개혁의 중요성을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World Bank(2008)은 선진 경제는 제도적 여건이 갖추어지고, 규제의 질이 우수하다고 평가하였다. 즉 경제의 투명성과 가측성이 확보되면 거래비용의 감소, 투자의 증가, 요소 이동성의 증가, 효율성 제고가 실현되면서 효율적인 경제가 실현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경제 위기 직후 규제개혁의 추세가 약화되고 있으며, 규제와 정부개입의 강화에 따라 경제자유도 지수와 등수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효율적 경제 실현을 위한 규제개혁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투자, 수출, 소비촉진을 통한 고도경제성장은 중소기업과 서비스 산업의 채산성 악화방지와 경쟁력 강화로부터 나온다. 경제성장과 채산성 악화의 주원인으로는 수익성 있는 투자처의 부족과 노동시장의 경직성, 경제정책의 유효성 및 효율성 약화 등의 원인을 들 수 있는데, 이는 공공부문의 개혁과 시장기능의 강화를 타개책으로 극복할 수 있다. 즉 규제개혁과 민영화, 재정 및 세제개혁, 경쟁정책을 통한 시장의 선별 및 자원배분 기능의 강화와 산업정책의 축소 등이 그 구체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규제는 감추어진 세금(hidden tax)으로 규제개혁은 추가적인 비용 없이 기업환경을 개선하여 투자를 활성화하는 수단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규제를 받는 중소기업들은 기업규제가 추가로 부담시키는 비용을 창출시키는 만큼 규제개혁에 따라 투자를 현재보다 더 확대하겠다는 투자의향이 강하다.

최근 우리나라의 주요 규제개혁은 수도권규제 개혁, 경제력 집중억제규제의 개

혁, 토지이용 및 주택관련 규제개혁, 금융규제의 개혁,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관련 규제의 개혁, 교육 및 인적자원 관련 규제개혁, 환경·안전·보건·식품위생·소방방재 등 사회적 규제의 개혁, 서비스 산업 관련 규제개혁 등이 추진 중에 있다.

제2절 대전광역시의 규제개선현황

1. 규제개혁 일반현황

대전광역시의 민선 4기 2년여 동안 불합리한 규제개혁으로 100억원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했다(대전광역시 보도자료, 2009.2.3). 분야별 창출 성과로는 대덕특구 등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규제해결 30억원,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30억원, 외국인 투자여건 구축 10억원, 시민생활 불편 규제 개선 30억원 등이다.

< 표 2 > 대전광역시 규제개혁 정비현황

(2008년 10월 31일 현재)

구분	심의·등록(정비계획)						정비완료					
	총계	폐지	완화	존치	신설	강화	총계	폐지	완화	존치	신설	강화
총계	91	364	37	163	120	7	691	364	37	163	120	7
조례	556	287	31	127	104	7	556	287	31	127	104	7
규칙	92	48	5	23	16	-	92	48	5	23	16	-
고시 등	43	29	1	13	-	-	43	29	1	13	-	-

자료: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대덕특구 등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규제해결은 대덕특구 내 기업연구소 전기요금을 저렴한 요금체제로 조정, 국토해양부장관의 도시기본계획수립권한을 시장에 위임, 행정절차 기간 단축, 택지개발시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공급금액 비율을 50%에서 30%로 하향 조정,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 지역 내 7층 이하 높이 제한규정 폐지, 영세자영업자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2%대로 인하 등이 그 주요내용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은 특구 내 기관의 상수도 요금 인하, 산업단지 내 건축물의 감면대상 범위를 가축, 대수선까지 확대, 대전 제34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사용

료 체납액 증가산금 폐지, 도매시장 법인 지정 유효기간 연장(5년), 영세·성실기업 및 유망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3~10년), 산업체 공업용수 가격 인하로 전국에서 제일 저렴한 공업용수 공급 등이다.

외국인 투자여건 구축으로는 외국인 대부료 감면범위를 외국인학교까지 확대, 외국인 시설투자시 5/100 범위내 시설보조금 지급,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기준규제 자율성 부여, 대규모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투자금액 50/100 범위에서의 특별 지원 등이다.

대전광역시는 그간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법령상 불합리한 규제 개혁 과제로 173건을 발굴,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으로 대덕특구 내 첨단기술 기업 지정요건 완화, 기업연구소 전기요금 인하 및 개발제한구역조정 가능지역 내 높이제한 규정(7층 이하) 폐지 등 지역 발전의 발목을 잡는 관계법령을 상당 부분 개정하였다. 또한 기업 등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위해 조례·규칙 내 품질 검사수수료 감면, 외국인 투자시설 보조금 지급 등 규제 13건을 완화하였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의 2008년 규제개선 건의과제 부처협의 중간결과 및 수용된 건의과제 목록이다.

< 표 3 > 2008년 규제개선 건의과제 부처협의 중간결과

□ 건의 부서 및 자치구별 과제 건수(34개 부서 등 173건)

건의기관	건수	건의기관	건수	건의기관	건수
경영법무담당관실	3	환경정책과	8	소방본부	6
정보화담당관실	1	푸른도시과	3	중부소방서	3
경제정책과	3	맑은물정책과	4	북부소방서	6
기업지원과	5	교통정책과	1	남부소방서	5
투자마케팅과	2	운송주차과	4	서부소방서	3
대덕특구과	8	건설도로과	2	동 구	17
농업유통과	10	지적과	1	중 구	17
회계계약심사과	2	건설관리본부	2	서 구	20
세정과	2	차량등록사업소	3	유성구	6
문화예술과	2	오정수산시장관리소	1	대덕구	15
보건위생과	5	노은수산시장관리소	1		
도시계획과	1	도시디자인과	1		

□ 소관 중앙행정기관별 과제 건수(14개 기관 173건)

중앙행정기관	건수	중앙행정기관	건수	중앙행정기관	건수
국토해양부	54	지식경제부	11	환경부	18
기획재정부	5	산림청	1	행정안전부	21
농림수산식품부	13	노동부	1	법무부	1
교육과학기술부	1	보건복지가족부	19	금융위원회	2
문화체육관광부	3	소방방재청	23	-	-

□ 부처협의 결과(5대 분야 173건)

구분	건수	수용	중장기검토	수용곤란	재협의
대덕특구 육성	173	57	15	78	23
기업규제	8	5	1	2	-
도시개발	11	3	4	3	1
환경규제	9	3	-	5	1
시민생활 불편규제	13	7	-	6	-

자료: 대전광역시 기획관리실 경영법무담당관

< 표 4 > 2008년 대전광역시 건의과제 목록(수용 57건)

순번	규제개혁 건의내용	건의 부서	소관 부처	검토 결과	비고
1	대덕특구내 첨단기술기업 지정요건 완화	대덕특구과	국토해양부	수용	대덕특구
2	부동산 실거래의 정정신고 방법개선	유성구	국토해양부	일부수용	
3	대덕특구내 기업연구소 전기요금 인하	기업지원과	지식경제부	일부수용	대덕특구
4	발코니 화장에 따른 동의기준 완화	대덕구	지식경제부	일부수용	
5	도시기본계획 수립권한 위임	도시계획과	국토해양부	수용	도시개발
6	특구내 개발개발사업 시행자 탄력 지정	대덕특구과	지식경제부	수용	대덕특구
7	특구내 입지시설 대상 확대	대덕특구과	지식경제부	수용	대덕특구
8	특구내 입주가능업종 확대	투자마케팅과	지식경제부	수용	대덕특구
9	산업단지폐기물처리시설 의무설치대상 조정	대덕특구과	지식경제부	수용	기업규제
10	건축물대장기재사항변경없이 사용가능토목 근린생활시설분류통합	서구	국토해양부	일부수용	
11	재건축조합설립시 주민동의요건 중 의결권 명문화국토	동구	국토해양부	수용	도시개발
12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추진기관 변경	농업유통과	농림수산식품부	수용	
13	공중위생관련 과정급처분 개선	중구	보건복지가족부	수용	
14	화물자동차 차고지설치 건축제한 완화	동구	국토해양부	수용	
15	다단계 불법화물운송행위 개선	중구	국토해양부	일부수용	
16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 개선	경영법무부	국토해양부	기수용	
17	수도권이전기업 법인세 부과에 대한 세제 개선	기업지원과	기획재정부	일부수용	기업규제
18	외국인학교 학력인정 등 제도개선	기업지원과	교육과학기술부	수용	
19	원인자부담금 부과근거 마련	건설도로과	국토해양부	수용	
20	비디오물 제작법 신고업무 이양	문화예술과	문화체육관광부	수용	

순번	규제개혁 건의내용	건의 부서	소관 부처	검토 결과	비고
21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역대학 지정	환경정책과	환경부	일부수용	환경규제
22	탄소포인트제도 운영방안 건의	환경정책과	환경부	수용	환경규제
23	농기계 임대사업 제도개선	농업유통과	농림수산식품부	수용	
24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확대건의	농업유통과	농림수산식품부	수용	
25	불법 닭 판매업소내 가금류에 대한 살처분 건의	농업유통과	농림수산식품부	일부수용	
26	승강기 관리체계 개선	동구	지식경제부	일부수용	
27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통보방법 개선	동구	국토해양부	일부수용	
28	민방위대원연명부 관리 개선	동구	소방방재청	일부수용	
29	농지원부등본 교부 발급절차 개선	동구	농림수산식품부	수용	
30	연접개발제도의 개선	중구	국토해양부	수용	도시개발
31	정비사업시행 관련 위법사항 행정처분등 신설강화	중구	국토해양부	일부수용	
32	식품직업 등 신원조회제도 개정(폐지)	서구	보건복지가족부	일부수용	
33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 제도 개정	서구	보건복지가족부	일부수용	
34	사전환경성검토 이행절차이행 예외규정 마련	서구	국토해양부	일부수용	환경규제
35	고물영업에 대한 관련규정 법제화	서구	환경부	수용	환경규제
36	화장신고시 구비서류 간소화	중구	행정안전부	수용	
37	"G4C 어디서나 민원"을 통한 전입세대 열람	중구	행정안전부	일부수용	
38	위험물제조소 등의 용도폐지신고 완화	소방본부	소방방재청	일부수용	
39	방염성능검사 대상 완화	소방본부	소방방재청	수용	
40	다중이용업소 과태료부과 기준완화 및 부과방법 개선	중부소방서	소방방재청	일부수용	
41	방염성능 중복검사 개선	북부소방서	소방방재청	수용	
42	주유취급소 건축물의 제한기준 완화	북부소방서	소방방재청	수용	
43	현장방역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 기준완화	남부소방서	소방방재청	수용	
44	지하저장탱크의 탱크 상호간 기준완화	남부소방서	소방방재청	수용	
45	다중이용업소 안전점검 기준완화	남부소방서	소방방재청	일부수용	
46	매매상사용 전산시스템 운영방법 개선	차량등록	국토해양부	일부수용	
47	환경법령위반업소 정보공개 법적근거 마련	환경정책과	환경부	수용	환경규제
48	매매참가인 신고시 구비서류 완화	오정동수산	농림수산식품부	수용	
49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 조항 개정 및 폐지	중구	보건복지가족부	수용	
50	장애인증명서 발급대상 확대 및 발급절차 개선	중구	보건복지가족부	수용	
51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규정 완화	대덕구	국토해양부	수용	도시개발
52	개발제한구역내 동물보호시설 설치규정 마련	농업유통과	국토해양부	수용	
53	건설기계 추소변경신고업무 개선	차량등록	국토해양부	수용	
54	대기배출시설허가 취소규정 신설	환경정책과	환경부	수용	환경규제
55	운행차의 수시점검결과 행정처분절차 개선	환경정책과	환경부	수용	환경규제
56	주식회사의 외부감사대상 자산총액 조정	기업지원과	금융위원회	일부수용	기업규제
57	지하수 수질검사위반 과태료부과 완화	맑은물정책과	국토해양부	수용	

자료: 대전광역시 기획관리실 경영법무담당관

2008년 대전광역시가 기업규제와 관련한 규제개선 건의과제는 수용 1건, 일부수용 2건, 중장기검토 3건, 수용곤란 3건, 검토 1건, 재협의 1건으로 총 11건이다.

수용된 1건은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의무설치 대상 조정으로 산업단지내 등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 규정에 대한 내용이다. 연간 폐기물발생량 2만톤 이상이고 조성 면적 5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산업단지를 개발설치의 경우 폐기물 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고 있다. 대부분의 산업단지가 복합산업단지로 조성되고 있어 단지 내 생활계폐기물 및 재활용폐기물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단지 내 생활계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약하여 단지 외에서 안정적으로 처리되어 있어 산발적 폐기물매립장 설치시는 유지관리 및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대전광역시 소방행정과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중 “연간 발생량 2만톤 이상”의 규정 중 승인기관 및 협의기관 승인을 받아 단지 외 처리한 양은 제외할 것과, 폐기물매립시설 의무설치 기준 산정시 폐기물매립장에 반입되지 않는 폐기물(재활용·생활폐기물)의 양은 제외할 것을 건의하였고, 이는 환경부 소관 법률로서 환경부의 검토·판단이 필요함에 따라 환경부와 협의하는 방향으로 건의가 수용되었으며, 단, 특구개발사업이 복합단지로 조성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환경부에 동 내용이 수용될 수 있도록 협의되었다.

일부 수용된 건의과제로는 수도권이전기업 법인세 부과에 대한 세제 개선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대상 자산총액 조정이다. 대전광역시 기업지원과는 지방이전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폐지할 것과 법인세 감면대상에 보조금도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적용기한 폐지와 관련해서 조세감면제도는 한 번 신설되면 기득권화·항구화하려는 경향이 있어 이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조세감면 효과를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불요불급한 조세감면제도는 폐지·정비하는 등 조세감면 제도를 경제여건 변화 등에 따라 신속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일몰제도는 불가피 하며, 다만 지방이전 관련 조세지원 제도의 경우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일몰시한등의 연장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지방이전 감면제도는 2011.12.31까지 3년 연장할 계획이라는 의견을 보내왔다. 또한 지방이전 보조금과 관련해서 보조금은 사용목적이 예정된 것으로, 비록 수령시에는 소득에 산입되어 기존소득에 포함됨으로써 과세소득을 증가시키나, 추후 보조금 지출시에는 비용으로 처리되어 기존 소득을 차감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결국 과세대상 소득을 감소시킴으로써 세수 중립적으로 운영 중이므로 수도권이전기업 세제개선에 대한 건의내용에 대해서

는 일부 수용하였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대상 자산총액 조정에 대해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개정에 관한 내용으로 외부회계감사 대상을 자산총액 70억원에서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의 주식회사로 조정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이에 대해서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기준 조정이 없어 외부감사 대상 회사가 크게 증가한 점 등을 감안하여 기준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며, 다만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할 때에 100억원 수준이 적당한 것으로 보아 일부 수용되었다.

부처협의 결과 중장기적으로 검토기로 한 건의과제는 국가산단지구내 용도지역 변경 및 높이 완화와 외국인 투자지역 유형 확대, 용역 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류 간소화 등이다. 대전광역시 산업용지킴은 광역도시계획 수립 지침의 조정가능지역 내 산업단지 조성가능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높이 제한규정을 용도지역 1종 일반주거·공업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2종 일반주거지역은 15층 이하로 제한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을 건의하였으나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하므로 용도지역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건축물 높이는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제2종 일반주거지역(15층)도 부여도 가능하나 서민 주거공간 확보를 위해 전체 주택 중 임대비율은 50% 확보를 전제하며, 다만, 공동주택 전체를 분양주택으로 건설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외국인 투자지역 유형 확대와 관련한 규제개선 건의는 현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연구개발시설이 2백만불 및 석사 10인 이상 연구인력이 상근해야 한다는 외국인 투자지역의 지정 및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는 데에서 출발하고 있다. 외국 R&D시설의 경우, 초기 설립단계에서는 대부분 국내 연구소와 공동연구로 소규모 투자가 주류이므로 외투자지역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투자유치 한계가 초래되고 있는 만큼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을 통해 외국 R&D센터 집적시설에 대한 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자체 R&D센터 집적시설 건립에 따른 국비 지원을 개선방안으로 제안하였다. 이 규제개선 건의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에서는 동 사항에 대하여 외국인투자환경개선 3개년계획 수립(08.5월)시 기획재정부(국제조세과) 등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검토하였으나, R&D분야의 적정지원 규모(현행 200만불 이상)에 대한 추가검토가 필요하여 중장기과제로 분류된 바 있으며, 향후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개선 차원에서 기획재정부(국제조세과) 등과 협의하여

추가 검토를 하는 등 중장기 검토기로 하였다.

반면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환경규제 완화, 비료생산업 등록요건 완화, 도매시장 운영방법 개선 및 권한 위임 등은 수용되지 못하였다.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환경규제 완화는 환경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에 대해 고탄유 및 고체연료 사용 금지와 청정연료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배출허용기준과 연료사용 제한 규제를 동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사용자의 연료선택권 제약으로 기업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기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연료의 사용에 관한 규제는 폐지하도록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건의하였다. 그러나 저황유의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 이내가 되도록 기준을 설정하고 있고, 저황유 외의 연료를 사용할 경우 방지시설이 설치 필요하여 사업자의 부담이 더 클 수도 있으며, 현재 사업자가 저황유를 사용하든지, 저황유 외의 연료를 사용하고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든지 사용 연료의 선택권이 보장되어 있어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로부터 수용곤란이라는 검토 의견을 받았다. 비료생산업 등록요건 완화에 대해서는 비료생산업체의 영업역량 등 규모에 따라 창고시설을 자율적으로 확보토록 비료생산업등록 요건 중 창고시설 면적기준을 삭제하는 현황에 대해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2조와 관련한 「별표2」의 비료생산업의 시설기타 등록기준에서 정하는 면적기준 100㎡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으나 비료관리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비료제조업을 등록코자 하는 자는 100㎡이상의 보관창고를 확보토록 하고 있으며, 동 보관창고는 생산된 제품을 보관하는 시설로서 미확보시 야적이 불가피하며, 이 경우 우수 등으로 인해 품질저하가 우려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설기준이므로 반영은 곤란하며 더불어 보관시설기준 삭제시 영세규모의 비료생산업자 등록 난립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우려하였다. 또 도매시장 운영방법 개선 및 권한 위임과 관련하여, 현재 중앙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을 변경할 경우에는 개설 허가권자(농림수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도매시장 개설자는 시장의 시설규모·거래액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의 도매시장법인 도는 시장도매인을 두고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중앙도매시장에는 부류마다 도매시장법인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중앙도매시장 개설 허가권자가 가지고 있는 도매시장 업무규정 변경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고 중앙도매시장에 반드시 도매시장법인을 두도록 하여 경직

된 시장운영 등의 요인이 되고 있는 관련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하였다. 이에 대해서 농림수산식품부 유통정책팀에서는 도매시장 업무규정 변경권한은 향후 법 개정시 중앙도매시장 개설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용 여부를 검토할 것이나 중앙도매시장은 거래비중이 크고, 도매시장법인의 도매시장 상장을 통한 경매(정가·수의 매매)로 출하농업인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물류시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건의과제는 추후 검토기로 하였으며, 지역제한 대상금액 상향 조정 건의과제는 재협의 하기로 하였다.

< 표 5> 2008년 대전광역시 건의과제 목록(기업규제 관련)

순번	규제개혁 건의내용	건의 부서	소관 부처	관련 부처	검토 결과
1	국가산단지구내 용도지역 변경 및 높이 완화	대덕특구과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중장기검토
2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환경규제 완화	기업지원과	환경부		수용곤란
3	비료생산업 등록요건 완화	농업유통과	농림수산식품부		수용곤란
4	산업단지폐기물처리시설 의무설치대상 조정	대덕특구과	지식경제부		수용
5	외국인투자지역 유형 확대	투자마케팅과	지식경제부		중장기검토
6	도매시장 운영방법 개선 및 권한 위임	농업유통과	농림수산식품부		수용곤란
7	물류시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경영법무부	국토해양부		검토
8	수도권이전기법 법인세 부과에 대한 세제 개선	기업지원과	기획재정부		일부수용
9	지역제한 대상금액 상향 조정	건설도로과	행정안전부		재협의
10	용역 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류 간소화	건설관리본부	국토해양부		중장기검토
1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대상 자산총액 조정	기업지원과		금융위원회	일부수용

자료: 대전광역시 기획관리실 경영법무담당관

2008년 대전광역시가 대덕특구와 관련한 규제개선 건의과제는 수용 2건, 일부수용 1건, 기수용 2건, 중장기검토 1건, 수용곤란 2건으로 총 8건이다. 수용된 4건은 대덕특구내 첨단기술기업 지정요건 완화, 특구내 입지시설 대상 확대에 대한 내용이다. 대덕특구내 첨단기술기업 지정요건 완화는 기술집약적이고 혁신속도가 빠른 기술 분야를 집중육성하기 위한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특구내 입주한 기업 중 지정요건을 갖춘 기업을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하고 법인세를 감면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3호 연구개발비 범위의 확대를 개선방안으로 건의하였으

며 관련법령 개정을 통한 첨단기술기업 지정요건 완화를 추진하고 「대덕연구개발 특구법」 시행령 제3조를 개정하여 연구개발비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방향으로 건의가 수용되었다. 대덕특구내 입지시설 대상확대는 현재 특구법령상 특구내 산업시설구역 등에서 액화가스판매소 및 산업폐기물 처리(매립)시설의 입지가 불가토록 규정되어 있어 지역주민 및 입주기업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문제점과 관련하여 특구법 시행령 별표8 14호, 16호를 개정하여 산업시설구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에 액화가스판매소 및 폐기물 매립장 시설을 포함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다. 이에 대해서 지식경제부에서는 이 시설들의 설치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설치시 주변 주거지역 주민들의 악취발생·위험 등의 이유로 민원이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특구법 시행령(별표8)의 개정 전 대전광역시 동 시설들의 입지와 관련한 지역주민과의 합의 등 선행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아 조건부로 수용하였다.

일부수용된 건의과제로는 대덕특구내 기업연구소 전기요금 인하가 있다. 대덕특구내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07.1.15일부터 산업용전기요금을 적용하고 있는 바, 대전시는 대덕특구내 기업연구소에 대해서도 산업용전기요금을 적용하는 등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행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용도별 요금체계로서 산업용전기요금은 기본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광업, 제조업에 적용하고 있으며 다만,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성과는 국가 전체적으로 활용되어 과학기술 관련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대하여 '07.1.15일부터는 산업용전기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현행 용도별 전기요금체계상 일반용전기요금 적용대상인 기업연구소에 대해 산업용전기요금을 적용할 경우, 대덕특구내 기업연구소 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연구소에서 산업용 적용을 요청 하는 등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여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또한 공급원가에 기초하여 일반용과 산업용간의 요금격차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과정에 있는 바 기업연구소에 대해서는 산업용전기요금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향후 요금체계 개편을 통해 적정요금이 부담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식경제부에서는 일부수용하였다.

개발계획 수립시 특구개발사업 시행자를 지정토록 한 특구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특구내 개발사업시행자 탄력 지정은 이미 특구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지방공기업” 등도 지정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따라서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에 한국토지공사 특구개발사업의 우선 사업시행자로 명시되어 있

다고 하여 반드시 동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되는 것은 아니며, 상위 규정인 위법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사업추진 여건 등을 감안 지정부장관이 지정할 사항임을 들어 특구법 개정은 불필요하다고 보았다. 마찬가지로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업종 및 자체 오염물질 처리능력 등을 갖춘 업종 및 업체가 입주가능할 수 있도록 대덕특구내 입주가능 업종 확대 건의 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최근 특구관리계획을 변경(대덕연구개발특구관리계획 변경고시(지식경제부고시 2008-140, 1008.10.2)) 하는 등 이미 기 수용된 바 있다.

부처협의 결과 중장기로 검토기로 한 건의과제는 특구내 국제 지방세 감면범위 확대가 있다. 현행 대덕특구내 조세감면은 첨단기술산업에 대하여만 지원되므로, 대덕특구 입주 인센티브로는 부족한 상황이며 이에 대전광역시는 대덕특구에 입주하는 모든 기업에 대하여 조세감면이 가능하도록 확대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조세는 규제가 아님에도 세제혜택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세제혜택에서 배제되는 것을 일종의 규제로 인식하는 것은 향후 정상적인 세제운용에 어려움만 가중되며, 향후 규제관련 건의에서 조세관련 사항은 모두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또 “규제”로서의 접근이 아닌 정상적인 세법 개정 건의에 대하여는 향후 제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세법개정안 마련시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 밝혀 수용권란 및 중장기 검토로 의견을 보내왔다.

반면 특구내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 간소화와 특구내 연구소기업 설립요건 완화 등은 수용되지 못하였다. 특구내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 간소화는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조정가능지역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건의한 것이나 국토해양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위임시에는 무분별한 개발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다. 또 현재 대덕특구내 연구성과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특구내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은 기술출자를 통한 연구소기업 설립이 가능한데, 이를 연구소기업 설립대상(특구법 제9조1항)을 현행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정부투자기관연구소 및 민간기업 부설연구소 등 모든 연구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건의하였으나 수용되지 못했다. 지식경제부는 이 내용은 비규제에 해당되며 연구소 기업은 수익사업에 제약을 받는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연구성과(기술)를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기술, 현금 등의 자산을 출자하여 설립하는 기업으로 수익사업에 대해 자율적으로 투자결정을 할

수 있는 민간기업 부설연구소와 정부투자기관까지 확대하는 것은 제도 도입 취지에 배치됨을 근거로 들었다.

< 표 6 > 2008년 대전광역시 건의과제 목록(대덕특구 관련)

순번	규제개혁 건의내용	건의부서	소관부처	관련부처	검토결과
1	대덕특구내 첨단기술기업 지정요건 완화	대덕특구과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수용
2	대덕특구내 기업연구소 전기요금 인하	기업지원과	지식경제부		일부수용
3	특구내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 간소화	대덕특구과	국토해양부		수용곤란
4	특구내 개발개발사업 시행자 탄력지정	대덕특구과	지식경제부		기수용
5	특구내 국제 지방세 감면범위 확대	대덕특구과		기획재정부	중장기검토
6	특구내 연구소기업 설립요건 완화	대덕특구과	지식경제부		수용곤란
7	특구내 입지시설 대상 확대	대덕특구과	지식경제부		수용
8	특구내 입주가능업종 확대	투자마케팅과	지식경제부		기수용

자료: 대전광역시 기획관리실 경영법무담당관

< 표 7 > 기업 등 수요자 중심의 조례 등 규제개선 추진현황

연번	과제명	주요내용
1	건설공사 품질관리 수수료 감면	건설공사 지역업체 참여확대 방안에 따른 품질검사 수수료 면제
2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대상 확대	업무택시제 시행 : 10%
3	학교급식비 지원규모 확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 또는 시설, 급식운영비, 급식시설·설비비까지 확대
4	도매시장 법인 등 지정·허가 유효기간 연장	지정 유효기간 3년 ⇒ 5년
5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사용료 체납 증가산금 규정 완화	증가산금 5/100 ⇒ 2/100
6	전용 공업용수 가격 인하	m ³ 당 170원 ⇒ 145원
7	상수도요금 가산금 산정요율 인하	가산금 5/100 ⇒ 2/100
8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등록세 감면	현행 50% 경감 ⇒ 75%
9	전방조종자동차 자동차세 부담 완화	2008년 : 66/100 2009년 : 33/100
10	예우대상 법인 세무조사 유예	지방세 체납액이 없고, 3년간 세무조사 추정세액이 없는 법인
11	산업단지내 산업용 건축물 개축·대수선에 대한 감면	취등록세 면제
12	외국인 투자 시설보조금 지원	외국인 투자기업 공장 신설·증설
13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원기준 완화	상시 고용인 거주기간 완화 이전기업 교육훈련 보조금 지급

자료: 대전광역시 기획관리실 법무통계담당관

2009년 상반기 대전광역시는 그간 기업 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걸림돌

이 되는 법령상 불합리한 규제개혁과제 총 50건(일반과제 32, 한시적 규제유예 18)을 발굴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관철을 위한 근질긴 노력으로 15건(일반과제 10, 한시적 규제유예5)이 수용되었다.

< 표 8 > 2009 상반기 건의 중앙규제 부처협의 결과

구분		합계	수용 (일부수용)	중장기 검토	수용곤란	미회신
계		50	15(30.0%)	3(6.0%)	31(62.9%)	1(2.0%)
분야	기업 활동 촉진	12	4	1	7	-
	지역경제 활성화	16	6	1	10	-
	국민편의 제고	22	5	1	14	1

자료: 대전광역시

주요 규제개혁 과제로는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설비 도시계획결정 배제, 발전시설의 폐기물고형연료 사용제한 완화 등 공장설립, 녹색성장, 신성장 동력 및 기업 활동 촉진 분야의 발목을 잡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며,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단 개발사업시 아파트형공장 의무임대 비율 완화(2년 유예),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권한 위임, 개발제한구역의 조정(해제) 기준 추가 및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 폐지(2년 유예)등을 개선하고, 국민편의 제고를 위해 개발제한구역내 시내버스 기점지 행위제한 완화,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차량 정밀검사 면제 확대, 옥외광고물 설치기준 개선 및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완화 등이다.

더불어 2009년 하반기에는 대전광역시가 건의한 핵심과제 중 중장기검토 및 재협의로 분류된 과제가 수용될 수 있도록 추적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대전시 현안 사업과 다수의 법령 및 여러 부처가 얽혀있는 ‘덩어리규제’ 발굴에 중점을 두는 한편, 국정기조인 서민생활 안정 및 녹색성장 관련 규제도 적극 발굴·개선하는 등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대전광역시 보도자료 2009.7.3).

< 표 9 > 2009 상반기 건의 중앙규제 부처협의 분야별 주요 '수용' 내용

분야	주요내용
기업 활동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발전용량 200킬로와트 이하의 제한과 도시계획 결정 없이 설비가능토록 개선 - 광역위생매립장을 운영하고 경제성 있는 폐기물발생 지역에서도 고품연료 전용발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완화 - 개발제한구역내 시내버스 기점지에도 부대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행위제한 완화 - '공원, 녹지, 실외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 시설' 도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지역에 추가
지역경제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단지 개발사업시 아파트형공장 건축 의무임대비율의 적용을 수도권지역 100분의 10, 수도권외 지역 100분의 5 이하로 완화(2년 유예) - 주택재개발시 건립 총세대수의 8.5%이상 임대주택건설 의무(2년 유예) -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권한을 자체실정에 맞는 개발계획수립을 위해 국해부장관에서 사·도·지사로 이양 - "공원, 녹지, 실외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도 개발제한구역으로 조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지역에 추가하도록 개선 - 업종이 유사한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의 용도를 제2근린생활시설로 통합하여 건축물용도 기준 개선 - 식품접객업(일반·휴게음식점)중 국민보건상 위해가 없는 관광특구, 가든, 호텔, 음식문화거리 등은 건물 밖에서 영업이 가능하도록 허용
국민편의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출가스저감장치 등 부착한 경유사용자동차는 정밀검사를 면제받도록 개선 - 층수와 높이를 병행 표기하여 어느 한쪽을 충족하면 옥상간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 -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현 3.5%를 중소기업 가맹점 수수료율 수준으로 인하하도록 완화 - 사업소세도 취득세와 같이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기한 후 신고 가능하도록 개선 - 농지법의 적용을 받는 농막 및 사료보관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적용을 제외하도록 개선

자료: 대전광역시

현재 대전광역시는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거나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사항 가운데 조금만 개선하면 해결될 수 있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개혁 시민제안 공모’를 실시중이며, 예상외로 많은 규제개혁 제안이 접수되었다. 접수된 규제개혁 제안은 시민들의 편의제고 분야 36건(42%), 지역경제 활성화 30건(37%), 기업 활동 촉진·신성장 동력·지역현안을 가로막는 등의 규제가 18건(21%)로 나타났다. 접수된 규제개혁 제안에 대해서는 규제개혁 T/F의 1차 심사와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대전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통해 선정될 예정이며, 우수제안은 ‘시민이 만든 규제개혁 과제’로 채택하여 실질적으로 정책화되도록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함과 동시에 이러한 시민공모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대전광역시 보도자료, 2009.7.3).

2. 대덕특구개발 관련 규제개혁 현황

최근 대전광역시 대덕특구개발에 지방공기업 참여의 길이 열렸다. 대덕특구 개발사업에 한국토지공사만이 우선사업시행자로 한정된 부분에 대해서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건의를 정부에서 수용하였다.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 계획’의 대덕연구 개발특구 구역 중 신규개발지구에 대해 한국토지공사를 우선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도록 제한한 규제는 대전광역시의 주된 관심사였다. 대덕특구법의 개발사업자는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에서 한국토지공사로 한정된 것은 타 사업시행자와의 형평성이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공기업도 참여토록 해야 한다는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 지식경제부에서 수용함으로써 대전도시개발공사 등 지방공기업도 대덕특구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72건도 해소했다. 대전광역시는 그동안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법령상 불합리한 규제개혁과제 173건을 발굴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관철을 위한 끈질긴 노력으로 72건을 해결하였으며, 그 밖에 특구 내 입주업종을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업종까지 확대, 입지시설 대상을 액화가스판매소 및 폐기물 매립장까지 확대 등 대덕특구육성의 발목을 잡는 불합리한 규제를 상당 부분 개선하였다. 또한 기업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의무설치 기준 산정 시 재활용·생활폐기물을 제외, 수도권기업 지방 이전 시 법인세감면기간 3년 연장 등의 내용도 포함되었다.

앞으로 대전광역시에는 대덕첨단산업단지 조성, 신탄진활성화사업, 녹색뉴딜 등 지역발전 역점사업에 저해되는 규제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디딤돌을 놓기 위해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대전광역시 보도자료, 2009.3.12).

3. 산업단지 관련 규제 개혁 현황

대전광역시는 산업단지 개발 인·허가에 평균 2년에서 4년이 걸리던 것을 산업단지 개발을 기업수요에 맞게 6개월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것을 처리중에 있다. 이를 위해 대전광역시는 산업단지 개발절차를 기업수요에 따라 간소화 하고자 ‘대전광역시 산업단지개발지원 센터 및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를 금번 제정하였으며, 사업단지 개발 인·허가를 조속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금번 제정된 조례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지원 센터 및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가 구성 운영됨에 따라 그동안 각 부서별로 추진되어 오던 복잡한 규제와 절차를 6개월로 대폭 단축하고, 인허가 과정에서 투자자가 겪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후속조치로서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제과학국에 ‘대전광역시 산업단지개발지원 센터’를 설치하여 산업단지 개발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설, 교통, 환경 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 관련 업무를 총괄협의 추진하여 처리기간이 2-4년에서 6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일반산업단지 등의 산업단지계획 수립 또는 승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중앙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재해영향평가위원회, 에너지사용계획 관련 심의위원회,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및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단축한다.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기업수요에 따라 산업단지가 개발됨으로써 산업단지개발·공급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대전광역시 보도자료, 2009.2.15).

제 4 장

설문조사분석

제1절 설문조사 개요

제2절 설문결과 분석

제4장 설문조사분석

제1절 설문조사 개요

충청권의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과제를 파악하고자 대전·충청지역을 중심으로 2009년 7월 30일부터 2009년 8월 7일까지 1차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150개 표본을 확보하고 2009년 8월 8일부터 8월 11일까지 2차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추가로 71개의 표본을 채취하는 등 총 221개의 표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충청권의 기업인을 주대상으로 설문조사원이 실시하였으며 이와 병행된 기업인터뷰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보조원이 실시하였다. 설문방법은 전문면접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설문지에 의한 1:1 개별 면접(인터뷰)조사를 원칙으로 하였다.

〈 표 10 〉 표본의 특성

구분	분류	표본수와 비율		구분	분류	표본수와 비율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연령	20대	40	18.1	성별	남성	166	75.1
	30대	91	41.2		여성	55	24.9
	40대	70	31.7	현 직장 종사년수	1-5년 미만	108	48.9
	50대	18	8.1		5년-10년 미만	65	29.4
	60대이상	2	.9		10년-15년 미만	35	15.8
입주지역	대전	111	50.2	주력업종	15년 이상	13	5.9
	충북	54	24.4		제조업	204	92.3
	충남	54	24.4		서비스업	8	3.6
	수도권	2	.9	IT관련산업	5	2.3	
	기타지역	-	-	건설업	1	.5	
종업원 수	10명 미만	67	30.3	매출액 규모	10억 미만	51	23.1
	50명 미만	111	50.2		50억 미만	89	40.3
	100명 미만	25	11.3		100억 미만	42	19.0
	500명 미만	17	7.7		500억 미만	37	16.7
	500명 이상	1	.5		500억 이상	2	.9

성별은 남성 75.1% 여성 24.9%였으며 연령은 30대와 40대가 주를 이루었다. 설문조사지역으로는 대전과 충남, 충북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특히 대전지역의 표본

수는 50.2%를 점유하였다. 설문응답자는 주로 제조업 종사자로 현지 사업장 근속연수가 5년 미만(48.9%)인 경우가 많았다. 소속회사의 성격으로는 100명 미만의 사업장(91.8%)과 년 매출액 100억 미만의 중소기업(82.4%)이 주를 이루었다.

제2절 설문결과분석

정부의 지역발전정책과 관련하여 대전·충청권의 규제개선과제를 분석하고 지역경제 및 산업의 특성을 감안한 기업유치전략 활성화를 모색하고자 충청권역 경제단체 및 기업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표 11 〉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한 지방의 규제개선과제의 중요도

단위 : %, 개(표본수)

항목	설문내용	전혀 중요 하지 않음	중요 하지 않음	보통	중요 함	매우 중요 함	총 계	평균	표준 편차
SN1	입지규제(그린벨트 등) 완화	0.9 (2)	8.1 (18)	32.6 (72)	49.3 (109)	9.0 (20)	790	3.57	0.803
SN2	건축 및 건설 규제완화	0.5 (1)	10.0 (22)	31.2 (69)	46.2 (102)	12.2 (27)	795	3.60	0.845
SN3	금융 관련 규제개선	0.9 (2)	5.4 (12)	35.3 (78)	42.1 (93)	16.3 (36)	812	3.67	0.844
SN4	환경 및 에너지 관련 규제완화	0.9 (2)	6.3 (14)	36.7 (81)	44.3 (98)	11.8 (26)	795	3.60	0.812
SN5	안전 관련 규제완화	1.4 (3)	7.7 (17)	46.2 (102)	35.7 (79)	9.0 (20)	759	3.43	0.815
SN6	노동 관련 규제개선	1.4 (3)	10.0 (22)	40.3 (89)	34.8 (77)	13.6 (30)	772	3.49	0.898
SN7	물류유통 관련 규제개선	0 (0)	7.7 (17)	35.7 (79)	44.3 (98)	12.2 (27)	798	3.61	0.799
SN8	광고, 수출입 등 기타 기업활동규제 개선	0.5 (1)	7.2 (16)	39.4 (87)	43.4 (96)	9.5 (21)	783	3.54	0.783

설문의 주요내용은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한 지방의 규제개선과제의 중요도, 지방경제 파괴력 측면에서의 수도권규제완화의 영향도, 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중요도, 지방의 기업유치 활성화에 미치는 중요도, 지자체의 규제개선 노력을 부정적으

로 평가하는 이유, 지자체의 규제개선 조례개정이 기업유치에 미친 영향, 정부/지자체 각종규제의 對대덕R&D특구 기업영영활동 저해 정도, 타지역 경제특구 대비 정부/지자체의 對대덕R&D특구 규제 정도 등이다.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한 지방의 규제개선과제 중 항목별 중요도를 묻는 5점 척도 질문에, 금융 관련 규제개선 3.67, 물류유통 관련 규제개선 3.61, 건축 및 건설규제완화 3.60, 환경/에너지 관련 규제완화 3.60, 입지규제(그린벨트 등) 완화 3.57, 광고 및 수출입 등 기타 기업활동규제 개선 3.54, 노동 관련 규제개선 3.49, 안전 관련 규제완화 3.43점 순으로 그 중요도에 응답하였다. 따라서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금융관련 규제개선이 제일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12> 수도권규제완화의 중요도 (지방경제 파괴력 측면)

단위 : %, 개(표분수)

항목	설문내용	전혀 중요 하지 않음	중요 하지 않음	보통	중요 함	매우 중요 함	총 계	평 균	표준 편차
SN9	수도권내 공장의 신·증설, 이전 규제 폐지/완화	1.4 (3)	6.8 (15)	28.1 (62)	43.0 (95)	20.8 (46)	829	3.75	0.908
SN10	공장·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	0.9 (2)	8.6 (19)	33.0 (73)	43.0 (95)	14.5 (32)	799	3.62	0.869
SN11	서울내 도시첨단산업단지 허용 (법 개정)	0.5 (1)	7.7 (17)	39.8 (88)	39.4 (87)	12.7 (28)	775	3.51	0.913
SN12	환경보전을 전제로 자연보전권역 규제개선	1.8 (4)	9.0 (20)	40.3 (89)	34.4 (76)	14.5 (32)	787	3.56	0.827
SN13	오염총량제(임의제) 실시관련 규제 완화	0 (0)	12.2 (27)	43.4 (96)	31.2 (69)	13.1 (29)	763	3.45	0.871
SN14	인천경제자유구역 권역조정	0.5 (1)	11.8 (26)	41.2 (91)	39.4 (87)	7.2 (16)	754	3.41	0.808
SN15	공공법인 사무소 신·증축 허용	1.4 (3)	8.6 (19)	47.1 (104)	35.7 (79)	6.8 (15)	744	3.38	0.794
SN16	군사시설보호구역 대폭완화	2.3 (5)	12.7 (28)	50.2 (111)	29.4 (65)	5.4 (12)	714	3.23	0.824
SN17	금융업소 등 과밀부담금 면제	2.3 (5)	9.0 (20)	40.7 (90)	37.1 (82)	10.9 (24)	763	3.45	0.886

지방경제 파괴력 측면에서 수도권규제완화 내용 중 어떤 사항이 얼마나 중요한지 묻는 질문에서, <표 12>와 같이 응답하였다. 수도권내 공장의 신·증설 및 이전 규제 폐지/완화 3.75, 공장·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 3.62, 환경보전을 전제로 자연

보전권역 규제개선 3.56, 서울내 도시첨단산업단지 허용 (법개정) 3.51, 오염총량제(임의제) 실시관련 규제완화 3.45, 금융업소 등 과밀부담금 면제 3.45, 인천경제자유구역 권역조정 3.41, 공공법인 사무소 신·증축 허용 3.38, 군사시설보호구역 대폭완화 3.23 순으로 그 중요도를 꼽았다. 따라서 정부는 수도권내 공장의 신·증설 및 이전 규제 폐지/완화와 공장·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에 대한 규제를 일괄적으로 풀지 말고 지방의 입장을 고려한 정책을 펼쳐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지자체도 이러한 기업인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대정부 건의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 표 13> 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중요도

단위 : %, 개(표분수)

항목	설문내용	전혀 중요 하지 않음	중요 하지 않음	보통	중요 함	매우 중요 함	총 계	평 균	표준 편차
SN18	투자 및 생산시설 확충 여건개선	0 (0)	2.7 (6)	22.2 (49)	48.0 (106)	27.1 (60)	883	4.00	0.778
SN19	노동시장의 유연성	0 (0)	4.5 (10)	31.7 (70)	49.8 (110)	14.0 (31)	825	3.73	0.755
SN20	기업의 진출입(창업) 용이성	0.5 (1)	5.4 (12)	31.2 (69)	45.7 (101)	17.2 (38)	826	3.74	0.822
SN21	환경친화적 그린테크놀로지	0.5 (1)	10.4 (23)	39.4 (87)	38.5 (85)	11.3 (25)	773	3.50	0.845
SN22	행정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0 (0)	5.4 (12)	35.7 (79)	37.6 (83)	21.3 (47)	828	3.75	0.852
SN23	임대산업단지 등 용지수급의 유연성	0.5 (1)	9.0 (20)	33.9 (75)	41.2 (91)	15.4 (34)	800	3.62	0.869
SN24	기술 경영지원 시스템 구축	0.5 (1)	4.5 (10)	28.5 (63)	50.7 (112)	15.8 (35)	833	3.77	0.784

그리고 지방의 입자를 고려할 때, 기업의 경쟁력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조건들을 묻는 질문에 투자 및 생산시설 확충 여건개선 4.00, 기술 경영지원 시스템 구축 3.77, 행정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3.75, 기업의 진출입(창업) 용이성 3.74, 노동시장의 유연성 3.73, 임대산업단지 등 용지수급의 유연성 3.62, 환경친화적 그린테크놀로지 3.50로 결과가 나와 투자 및 생산시설 확충 여건개선이 제일 시급한 지자체의 정책과제로 응답되었다.

한편, 지방의 기업유치 활성화에 지자체의 어떤 인센티브가 중요한지에 대한 질문에서 조세감면 4.16, 인허가 등 행정절차 간소화 4.10, 국비보조 4.09, 상시적 인센티브제도 3.95, 산업단지 정비 3.86, 기타 물류 및 인프라 구축 3.83으로 집계가 되어 조세감면과 국비보조와 같은 금융지원이 가장 시급한 기업유치 활성화 정책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 표 14> 지방의 기업유치 활성화에 미치는 중요도

단위 : %, 개(표본수)

항목	설문내용	전혀 중요 하지 않음	중요 하지 않음	보통	중요 함	매우 중요 함	총 계	평 균	표준 편차
SN25	상시적 인센티브제도	0.5 (1)	2.7 (6)	22.6 (50)	49.8 (110)	24.4 (54)	873	3.95	0.788
SN26	국비보조	0 (0)	0.5 (1)	19.5 (43)	50.7 (112)	29.4 (65)	904	4.09	0.708
SN27	조세감면	0.5 (1)	1.4 (3)	14.9 (33)	48.0 (106)	35.3 (78)	920	4.16	0.757
SN28	인허가 등 행정절차 간소화	0.5 (1)	2.3 (5)	14.9 (33)	51.6 (114)	30.8 (68)	906	4.10	0.762
SN29	산업단지 정비	0 (0)	2.3 (5)	28.5 (63)	43.4 (96)	25.8 (57)	852	3.86	0.796
SN30	기타 물류 및 인프라 구축	0.5 (1)	2.3 (5)	31.7 (70)	45.2 (100)	20.4 (45)	846	3.83	0.790

그리고 지자체가 규제개선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규제개선 노력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시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형식적이고 실효성이 없는 규제개선방식 34.8, 수도권규제완화로 효과의 상대적 경감 18.1, 규제개선 후속조치 실현의 미흡 12.2, 규제개선의 부작용에 대한 대책 미흡 11.8, 신규 규제로 인한 규제개선효과 반감 11.3, 핵심규제의 완화 결여 7.2 점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로써 지자체의 행정편의주의적인 규제개선 노력은 실효성이 떨어지며 수도권규제완화에 대응하는 전략적 대응방안도 미흡함이 암묵적으로 들어났다.

< 표 15 > 지자체의 규제개선 노력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

단위 : %, 개

항목	내 용	표본수	점유율	총계	평균	표준 편차
①	형식적이고 실효성이 없는 규제개선방식	77	34.8	654	3.10	1.982
②	신규 규제로 인한 규제개선효과 반감	25	11.3			
③	핵심규제의 완화 결여	16	7.2			
④	규제개선의 부작용에 대한 대책 미흡	26	11.8			
⑤	규제개선 후속조치 실현의 미흡	27	12.2			
⑥	수도권규제완화로 효과의 상대적 경감	40	18.1			
Missing	System : 무응답	10	4.5			

한편 규제개선에 대한 지자체의 조례개정이 해당 지역으로의 기업유치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설문한 결과, '매우 크다' 2.3%, '크다' 22.6%, '보통이다' 52.0%, '적다' 20.4%, '매우 적다' 2.3%로 보편적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 표 16 > 지자체의 규제개선 조례개정이 기업유치에 미친 영향

단위 : %, 개(표본수)

선택 항목	매우 크다	크다	보통이다	적다	매우 적다	총계	평균	표준 편차
응답 결과	2.3 (5)	22.6 (50)	52.0 (115)	20.4 (45)	2.3 (5)	655	2.98	0.785

그리고 정부 및 지자체의 각종 규제가 대덕R&D특구 내 기업들의 경영활동에 저해된다고 생각하는나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2.7%, '그렇다' 27.1%, '보통이다' 50.7%, '그렇지 않다' 19.0%, '전혀 그렇지 않다' 0.5%로 조사되어 대체적으로 대덕특구의 활성화가 지자체 및 정부의 각종 규제에 의해 지연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 표 17 > 정부/지자체 각종규제의 對대덕R&D특구 기업경영활동 저해 정도

단위 : %, 개(표본수)

선택 항목	매우 크다	크다	보통이다	적다	매우 적다	총계	평균	표준 편차
응답 결과	2.7 (6)	27.1 (60)	50.7 (112)	19.0 (42)	0.5 (1)	630	2.86	0.746

〈 표 18 〉 타지역 경제특구 대비 정부/지자체의 대덕R&D특구 규제 정도

단위 : %, 개(표본수)

선택 항목	매우 크다	크다	보통이다	적다	매우 적다	총계	평균	표준 편차
응답 결과	1.4 (3)	19.5 (43)	54.8 (121)	22.6 (50)	0.9 (2)	662	3.02	0.720

정부 및 지자체의 대덕R&D특구에 대한 규제들이 경제자유지역, 특별자치도, 산업단지 등 타 지역의 경제특구에 비해 과하다고 생각하는다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1.4%, ‘그렇다’ 19.5%, ‘보통이다’ 54.8%, ‘그렇지 않다’ 0.9%, ‘전혀 그렇지 않다’ 0.9%로 응답되어 지자체 및 정부의 각종 규제 정도는 타 지역과 비교해 대등소이한 것으로 나타나 대덕R&D특구의 특구라는 위상이 규제완화로 인해 격하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 5 장

요약 및 결론

제5장 요약 및 결론

제1절 규제개선 문제점

규제개선 추진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첫째로 행정부 위주의 추진체계의 문제점이다. 행정부의 우위적인 권력분립은 규제개선 추진에 있어 이미 집행중인 법률에 근거한 규제의 관리는 가능할지라도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어 제정되는 규제들에 대해서는 사전 심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요소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규제 신설과 강화에 의원입법을 통로로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엄격한 사전심사를 거친 규제의 입법화에 비해, 도입되는 규제의 합리성 검토 및 타당성이 부족하여 불량규제가 도입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사전심사제도의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또한 문제점 중 하나이다. 신설규제의 도입이나 기존규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규제영향 분석서를 작성하고 이를 평가하여 규제의 합리성 및 타당성을 판단해야 하는 과정에서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과 평가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며,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전심사는 신설규제의 도입과 기존규제의 강화가 용이하게 이루어지는 문제점을 발생시킨다.

더불어 민원해소 방식의 규제개선 추진방식은 그 한계를 가지고 있다.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한 국회의 규제개선에 대한 의지는 충분히 평가할 만하지만, 한시적인 규제개선 추진방식이 아닌 행정서비스 품질을 제고시키고, 규제개선 그 자체로의 목적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사전심사 없이 도입되고 있는 규제들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입법을 통해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 규제 개선의 방향이라 할 수 있다.

둘째로 시행과정상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규제개선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점은 기업들이 투자활성화를 위해서 요구하는 개선대상규제들과 정부가 선정한 개선대상 규제들의 구성 및 개선에 관한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점이다.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규제 개선에서는 기업들이 요구하는 규제개선과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선순위에 밀리거나, 일부만 개선되거나, 혹은 오히려 규제강화가 이루어지고 경우도 있다. 결국 정부가 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규제개혁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정부의 논리와 명분에 입각한 규제개혁을 실시함

에 따라 규제개선에 따른 그 성과나 체감도는 예상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선의 경우 크게 나타난 실질적인 진전이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여전히 핵심 규제개선 과제들은 계획상태에 놓여 있으며, 규제 개선 과제들 중 중앙정부에서 온전히 받아들이는 개선 과제들의 비중 역시 그 성과를 논할 만큼 많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정책적 규제에 해당하는 수도권규제, 경제력집중 억제 규제, 노사관계 관련 규제 등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조속한 추진이 가로막히고 있다. 출자총액제한 규제 유지,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 강화, 노사관계 관련 규제의 개혁 부진 등은 규제개선의 성공을 제약하는 원인들에 해당한다. 더불어 이데올로기적 가치판단에 입각한 양극화 해소, 사회정의 실현, 불평등성 제거 등은 명분을 가지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시장에 의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저해할 가능성 등이 있어 궁극적으로는 규제를 통해 보호하려 했던 당사자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제2절 규제개선 성공요건

규제개선의 성공요건은 첫째로 행정서비스 체계의 구축이다. 규제에 인한 이익의 수혜가 기업과 가계가 되어야 함에도 정책 당국이 되었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규제 접근 시각을 기업과 가계를 고객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과 가계를 고객으로 인식함으로써 규제에 따른 편의성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 고객 관점에서의 서비스 마인드를 제고할 행정서비스 체계의 구축도 필요하다. 또한 규제영향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고 윈스톱 행정서비스 등을 함과 동시에 집행 주체인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교육 훈련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행정서비스 의식 변화를 제고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정부와 기업의 투명한 교환 프로세스 정립이다. 규제와 관련한 정책들은 마땅히 상호간 커뮤니케이션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의 규제 정책들은 이러한 상호간 커뮤니케이션이 아닌 일방적인 형태로 진행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은 규제를 받는 입장으로 하여금 규제 개선 차원의 제언을 통한 성과를 제고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정부의 규제 정책 정보와 기업의 기업 활동 간의 상호 교류는 불신에서 오는 행정 비용 부담의 최소화와 기

업의 생산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끌 것이다. 기업 또한 기업 활동에 저해가 되는 정부 규제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규제 남발을 제거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대응태도가 필요하며, 수시로 규제 개선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요구를 시도해야 할 것이다.

세째로 규제 운영의 탄력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급변하는 시장의 변화에 규제가 융통성 있게 적응하기 위해서는 규제 조치들의 운영 탄력성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규제 운영의 탄력성 제고를 위해서는 규제영향분석, 규제총량제, 규제일몰제 등과 같은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면서 급변하는 환경에 대한 규제 적응력을 배가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 규제의 실효성을 테스트하고 검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려는 끊임없는 노력도 요구된다.

넷째로 글로벌 규제에 순응함으로써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경제여건을 만들 필요가 있다. 현재 규제 개선에 관한 논의는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미 각 무역협정에서는 무역 관련 규제 법령과 행정적 절차까지도 포괄하는 ‘규제의 투명성(Regulation Transparency)’이 다루어지고 있으며, 국가 간 상호 규제 조화를 위한 어떤 제약도 없는 국제의 내외국 동일적용을 지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통상 및 환경, 노동, 자본, 금융 등의 분야에서 글로벌 규제 순응에 대한 준비가 시급하며, 특히 해당 분야의 전문가 양성과 국제 규제 관련 전문기관의 노하우 습득 등 적극적인 인력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제3절 규제개선 향후과제

1. 대전시조례 및 시행규칙 재 정비

먼저 대전광역시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조례 제4장 유망 중소기업 지원·육성 제11조 2항 유망 중소기업의 선정대상에 대한 내용에 대해 선정대상의 분야 확대할 것과 2,3호의 경우 유망 중소기업의 선정대상으로 적절한 지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며, 3항 유망 중소기업 선정에 대한 기업정착도, 성장성, 지역경제적 효과, 재무상태 및 기술성 등 평가에 대한 구체적 기준 명시가

필요하다. 둘째, 대전광역시 벤처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제1조 기존 도심의 활성화와 벤처기업의 유치를 위한 지원인데, 사실 이 두 가지는 분리되어야 하는 것을 제고하여야 하며, 특히 제3조의 내용을 토대로 보았을 때, 기존도심의 활성화와 관련된 조례는 따로 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제6조 2항 재정 지원은 대상기업별로 입주 후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2년이라는 제한이 적정한가에 대한 논의도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셋째,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제15조는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1항 및 2항에 대하여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대전광역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에서 제6조 (용자승인 통보) 1항에서 시장은 용자신청 접수마감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용자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용자신청기업 및 기금관리은행에 통보하여야 하는데, 20일 이내가 아닌 15일 이내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제25조(사업완료보고서 제출) 제3항 시장은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기업에 대하여 이행촉구, 시정요구 또는 경고를 할 수 있다는 항에 대하여 더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 다섯째,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에서 제13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으나, 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해서는 공무원 파견 및 겸임이 아닌 전문인력 고용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촉진조례에서는 먼저 제5조(임대료 지원) 2항 임대료 지원은 임대료의 100분의 25 범위안에서 임대계약기간동안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지원기간 5년을 3년으로 조정할 것과, 제10조(기술이전·사업화 지원) 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은 기업이 부담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범위안에서 사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3억원까지 그 한도를 확대하는 것을 제고해야 한다.

13조(산업용지 지원)에서 산업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거나 장기대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산업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것은 무리이며 따라서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제17조(사후관리) 제2항에서 시장은 지원을 받은 기업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사업계획 및 지원조건에 대한 추진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으나, 이

해관계인 및 관계공무원보다는 전문적으로 더 객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전문가에게 조사를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

2. 규제개선 전략

규제개혁과 규제품질 제고를 위해 OECD는 행정의 간소화, 규제영향분석의 적극적 활용, 투명성과 의사소통 제고, 규제대안의 가능성 확인, 행정적 정당성과 책임성 지원, 순응 및 이행강제를 권유하고 있다. 또한 World Bank는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경쟁도가 높은 시장에서는 규제를 단순화하고 철폐할 것과 소유권의 보호 및 강화에 초점을 맞출 것,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과 기업활동에 사법적 개입의 감소, 개혁을 지속적인 과정으로 인식하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무엇보다 규제개혁의 우선순위 설정과 미등록규제 발굴 개선해야 한다. 대기업 분야, 공장입지, 금융, 창업 등의 분야에서 현장의 수요를 파악한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규제에 대한 개선과, 취약분야에 대한 우선적 개혁 노력이 필요하다. 동시에 규제개혁 성과평가를 위한 지수개발을 통한 체계적인 평가시스템 구축과 RIA(규제영향분석)의 적극적 활용과 철저한 사후관리 도입을 통해 체계적 관리 시스템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기업이 기업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기관으로 인식하고 있는 지자체에 대한 기업의 만족도는 충분치 않은 상황이며, 의원입법의 경우에는 규제영향의 분석이 미흡한데다 규제 신설 및 강화가 지속되고 있어, 지자체의 규제개혁 강화 및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 신설을 견제하여야 한다. OECD에 의하면 행정규제 비용의 경우 GDP의 2~4%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규제 제거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책임 소재를 명료화시키기 위하여 사전적 행정규제에서 사후적 사적 규제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사적 규제의 작동을 위해서는 변호사 수가 증대되어야 하며 신속한 재판 등 법체계의 대폭 수정이 불가피 하며 규제개혁을 요구하는 한편, 동시에 정부의 관리 강화 역시 요구하는 모순된 행동들이 빈발하므로 사회적 여론 조성 방식도 필요하다.

기업 창업을 저해하는 제반 규제에 대해서는 기업의 활동 제한, 불합리한 절차 등 기업 환경을 저해하는 규제가 산적한 만큼 제반 규제들을 주제별로 분류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한 후 액션 플랜에 따른 개선 추진을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며,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의 원활한 진입과 퇴출은 경제의 역동성과 생산성을 제고시키게 될 것이다.

FDI 유치 실패 및 저조한 실적은 자본 축적과 선진 노하우 및 기술의 도입, 산업 고도화, 경영기법의 전수 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의 저해요인으로 지목된다. 이러한 FDI 유치의 부진은 인프라, 인적자원 측면에서는 경쟁국에 비해 비교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노사문제, 노동비용, 규제, 정책의 비일관성 등이 주요 장애요인으로 조세감면과 절차 간소화 등의 인센티브 정책만으로는 FDI의 유치 및 확대에 한계이다. 특히 국내외 투자자들은 토사문제, 노동비용, 규제를 투자의 주요 저해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규제개혁과 합리적인 노사문화의 정착,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부 정책의 일관성 확립이 중요하다. 더불어 외국인을 위한 의료 및 교육 등의 생활편의시설, 행정처리 등 제반 여건 정비들이 필요하며, 기업환경개선을 통한 외자 유치 활성화를 제고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권오혁·이성균, 「영국 웨일스개발청의 기업유치 전략과 성과」, 『한국경제지리학회지』 제12권 제1호, 한국경제지리학회, 2009
- 광주광역시, “1등 광주 가속화의 해 2009 주요업무계획”, 광주광역시, 2008
- 김영봉, 「군사시설 및 보호구역의 설치가 정주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국토』 통권291호, 국토연구원, 2006
- 김영학, 「외국인투자기업 지원제도 및 환경 개선」, 『나라경제』 2002년 10월호, KDI 경제정보센터, 2002
- 김인중, 「지역발전 촉진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질차 간소화 방안」, 『도시문제』 제43권 제483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08
- 김성일, 「건설산업분야의 규제실태와 규제개혁 방안」, 『건설경제』 통권34권, 국토연구원, 2005
- 김시정, “주요 법률에 나타난 규모별 기업규제 현황과 과제”, 자유기업원, 2009
- 김정태, 「경기회복을 위한 노동시장 개선방안」, 『경영계』 통권 제319호, 한국경영자총협회, 2005
- 김재원, 「기업하기 좋은 여건 마련의 의지 강해야」, 『경영계』 통권 제334호, 한국경영자총협회, 2007
- 김진국, “규제개혁과 경쟁정책: 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위한 선별적 규제개혁의 문제점(일본과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대외경제전문가포럼 토의자료 2001-2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 KDI 경제정보센터 『나라경제』 편집실, 「기업투자 활성화 지원」, 『나라경제』 2003년 5월호, KDI 경제정보센터, 2003
- 대전광역시 기획관리실 경영법무담당관, “2008 규제개선 건의과제 부처협의 중간결과 - 중앙건의의 173건 규제목록”, 대전광역시, 2009
- 류종현·김진기, “수도권 공장입지규제 완화의 영향과 정책방향”, 강원발전연구원, 2006
- 리장영, 「서브프라임 사태와 금융규제, 감독 강화방안」, 『주간 금융 브리프』, 17권 17호, 한국금융연구원, 2008
- 반영운, 「개별입지 집적지의 준산업단지 조성전략」, 『국토』 통권 328호, 국토연구원, 2009

- 박영철, 「국가산업단지정책의 개선방안」, 『국토』 통권328호, 국토연구원, 2009
- 박종진, “클러스터의 구축 및 발전전략에 관한 비교연구-한국의 대덕R&D특구, 아일랜드의 Shannon, 일본의 기타규슈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7
- 박창현, “클러스터 내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실증연구-성장지원 네트워크 중심으로”, 한밭대학교 창업경영대학원 창업학과 석사학위논문, 2007
- 서명관, 「경제자유구역 제도개선 모색」, 『국회보』 통권 487호 (2007년 6월), 국회사무처, 2007
- 소성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의 평가와 과제」, 『법과 정책연구』 8월 2호, 한국법정책학회, 2008
- 안혁근, “수도권 공장총량제 규제 개선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2006
- 양금승,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기업 활동 관련 규제 개선 과제」, 『지방자치』 통권 236호, 미래한국재단, 2008
- 양현봉, 「주요 선진 국가의 법인설립 절차 비교분석」, 『KIET산업경제』 통권 85호, 산업연구원, 2005
- 양현봉, 「창업절차 간소화 및 비용절감 방안」, 『KIET산업경제』 통권 95호, 산업연구원, 2006
- 윤영미, 「경기도의 해외기업투자유치 현황과 성과 - 경제사회적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국제정치학회 기타간행물』, 한국국제정치학회, 2006
- 이석호, 「방카슈랑스 최근 동향 및 판매규제 개선방안」, 『주간 금융 브리프』 17권 31호, 한국금융연구원, 2008
- 이원우,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의한 재산권 제한과 피해구제방안」, 『법학논총』 제 19집, 한양대학교법학연구소, 2002
- 이윤석, 「주요국의 금융규제 개편논의와 시사점」, 『KIF 금융논단 모음집』 2008권, 한국금융연구원, 2008
- 장홍훈·이종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를 위한 마케팅믹스 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항만경제학회지』 제24권 제3호, 한국항만경제학회, 2006
- 최정표, 「새해 경제운영은 이렇게-기업규제완화정책을 중심으로」, 『나라경제』 2003년 1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03
- 한영환·이성로, 「한국의 정치상황과 규제개혁의 한계: 기업규제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제11권 제2호, 2003

홍성범·임덕순·이명진·이정협·장승권, “해외 신흥 혁신클러스터의 특성 및 성장요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1

Economic Freedom Network, “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2008 Annual Report“, 2008

World Bank, “Doing business 2009: country profile for Korea-comparing regulation in 181 economies“, 2008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 2008.10.30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09년도 금융위원회 규제개혁계획 수립”, 2009.1.23

대전광역시 보도자료, “대전시 대덕특구개발에 지방공기업 참여의 길 열려-지방발전을 옥죄는 규제개혁 과제 173건 중 72건 해결”. 2009.3.12

대전광역시 보도자료, “대전시 ‘숨어있는 100억을 찾았습니다!-불합리한 규제개혁으로 100억원 이상의 경제적 이익 창출’, 2009.2.3

대전광역시 보도자료, “대전시, ‘산업단지 인·허가 6개월로 끝낸다-대전시 산업단지 인·허가 2-4년 기간에서 6개월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 2009.2.15

대전광역시 보도자료, “대전시 규제개혁 대전시민이 앞장섰다-규제개혁 시민제안 공모 결과 83건의 아이디어 쏟아져-”, 2009.7.3

대전광역시 보도자료, “대전시의 돋보이는 규제개혁 성과-2009. 상반기 중앙 건의과제 50건 중 15건 풀다”, 2009.7.3

정책연구보고서 2009-13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과 지역경제
-대전·충청권을 중심으로-

발행인 유 병 로

발행일

발행처 대전발전연구원

302-789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본1길(월평동 160-20)

전화: 042-471-5620 팩스: 042-471-5615

홈페이지 : <http://www.djdi.re.kr>

인쇄: ○○○○○ TEL 042-○-○ FAX 042-○-○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대전광역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